
여연브리프

트렌드 분석 및 빅데이터실
김장우 연구위원

사전검열 국가로의 이행? -2026 온라인 규제 3법의 중첩 효과 분석-

2026년 8월 28일



사전검열 국가로의 이행? -2026 온라인 규제 3법의 중첩 효과 분석-

여의도연구원 트렌드 분석 및 빅데이터실 김장우 연구위원

업로드·유통·사이트 '3중 관문', 2026 온라인 규제 3법, 개별 규제의 합을 넘어 '상시 사전심사 체계'로

- 저작권법 긴급차단(5.11)·이미지 사전 필터링(7.1)·허위조작정보근절법(7.7), 두 달 새 잇달아 발효
- 법률의 풍자·패러디 면제는 가이드라인이 축소, 과징금 고시는 '민주적 사회질서'·'정책 왜곡'을 배점 요소로 도입, 구간 간 기준금액 격차 최대 100배
- 온라인 언급량 평시의 213배, 부정 여론 68.3%, 반발을 이끈 것은 진영이 아니라 이용자·창작자·중소 사업자

명분은 달라도 설계는 같다

불법복제물 사이트 긴급차단제(저작권법, 5월 11일), 불법촬영물 사전 필터링 대상의 이미지 확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7월 1일),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도입한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7월 7일)은 관장 부처도 규율 대상도 제재 수단도 다르다. 그러나 세 제도는 공통의 설계를 공유한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앞서 행정기관·기술·플랫폼이 먼저 조치하고, 규제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하며, 이행 비용과 책임이 민간에 넘어간다. 따라서 초점은 개별 법률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제도가 겹쳐 작동할 때 나타나는 '체계 효과(system effect)'에 두어야 한다.

업로드 → 유통 → 사이트, 세 관문이 상시 결합

중첩의 결과는 3중 관문 구조다. 게시물은 업로드 단계에서 이미지 사전 필터링을 거치고, 유통 단계에서 플랫폼의 자율조치와 게재자 제재 위험에 노출되며, 사이트 단계에서는 행정기관의 긴급차단 대상이 된다. 각 관문은 스스로를 '예외적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세 관문이 상시로 결합되면 이용자가 체감하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상시적인 심사다.

하위규범으로 내려갈수록 넓어지는 규제

법률은 '허위조작정보'에 고의·목적 요건을 두고 풍자와 패러디를 명문으로 제외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가이드라인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풍자·패러디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과징금 고시는 시행령이 열거하지 않은 '국가안전·민주적 사회질서'와 '정책 왜곡'을 중대성 배점 요소로 도입했다. 정부 정책 비판이 '정책 왜곡'으로 평가되면 허위의 정도가 같아도 한 단계 위 구간으로 이동할 수 있고, 구간 간 기준금액 격차는 5백만 원에서 5억 원까지 최대 100배에 이른다.

위헌 논란·오검열·통상 마찰이 동시에 현실화

시행 첫날 접수된 헌법소원 2건은 7월 21일 직접성·현재성 등 청구요건 미충족으로 각하돼 본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1월 15일 당론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안과 온라인 접속국가표시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심사 단계에 계류 중이다. 기술적 통제의 정확성에도 의문이 남는다. 특징값 자동 대조는 국가 데이터베이스 등재 내역에 대한 외부 검증 절차가 없고, 이를 보완하는 자체 인공지능 판별 모델에서는 수영복 사진·میم·수학 문제까지 차단한 오탐 전력이 보고됐다. 여기에 Cloudflare가 미 무역대표부에 한국의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규제를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미 국무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심각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언급량 평시의 213배, 담론을 이끈 것은 커뮤니티

여의도연구원 자체 분석(2026.4.1.~8.16.) 결과, 정보통신망법 관련 주간 언급량은 시행 직후인 7월 2주차에 5,323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4~5월 평시 주 평균 약 25건의 약 213배이며, 한 달 뒤인 8월 2주차에도 평시의 약 11배를 유지했다. 감성은 부정 68.31%로 3법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언급이 가장 많이 나온 채널은 커뮤니티·카페(4,323건, 38.9%)로 뉴스 3종(2,340건, 21.1%)을 웃돌았다. 언론이 아니라 일반 이용자와 창작자, 중소 사업자가 담론을 견인한 것이다.

비교법적 위치: 미국·독일·프랑스·EU 중 가장 강한 유형

비교법적 방향은 반대다. 미국은 표현을 미리 막는 사전제한을 위헌으로 추정하고 사후 책임을 원칙으로 삼으며, 연방대법원은 모호한 개념에 기댄 인터넷 규제도 위헌으로 선언한 바 있다. 프랑스 아비아법은 핵심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좌초했고, 독일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은 과잉차단 논란 끝에 2024년 독일 디지털서비스법(DDG) 시행으로 대부분 폐지되어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체계로 흡수됐다. DSA는 포괄적·일반적 사전 감시 의무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반면 한국 3법은 사전 필터링·행정 차단·유통 규제가 한꺼번에 결합된, 비교 대상 4개국·지역(미국·독일·프랑스·EU) 중 가장 강한 유형이다.

쟁점은 ‘규제 여부’가 아니라 ‘규제 설계’

불법촬영물·불법복제물·악의적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위법성을 누가·언제·어떤 절차로 판단하는지가 헌법 원칙과 충돌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재설계의 축은 ‘판단의 사법화’, ‘절차의 투명화’, ‘비용의 합리적 분담’이 되어야 한다.

1. 온라인 규제 환경의 급변

1. 두 달 사이 순차 발효된 3개 규제

□ 2026년 5~7월, 온라인 콘텐츠 규제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재편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의 두 달 사이에 온라인 콘텐츠 규제의 지형은 근본적으로 재편되었다. 앞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른바 미디어 3대 입법(방송3법, 방미통위 설치법, 허위조작 정보근절법)이 야당의 무제한토론이 종결된 뒤 여당 주도로 처리된 바 있다.¹⁾

이 흐름의 연장선에서, 이번에는 방송사의 지배구조가 아니라 인터넷에 올라오는 개별 게시물과 사이트 자체를 직접 겨냥한 세 개의 규제가 짧은 간격을 두고 잇달아 발효되었다.

첫째는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불법복제물 사이트 긴급차단제’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를 정부가 곧바로 접속 차단할 수 있게 한 제도로, 2026년 5월 11일 조기 시행되었다. 둘째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이다. 불법촬영물을 걸러내기 위해 사업자가 취해야 하는 기술적 조치의 대상이 기존의 동영상에서 이미지 파일까지 확대되었고,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셋째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다.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손해액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새로 도입했으며 2026년 7월 7일 시행되었다.

세 규제는 관장 부처도, 규율 대상도, 제재 수단도 서로 다르다. 다음 [표 1]은 세 제도의 골격을 한눈에 비교한 것이다.

[표 1] 2026년 온라인 규제 3법 개관

구분	핵심 내용	시행일	판단·집행 주체	제재 수단
저작권법 (긴급차단제)	불법복제물 사이트 선(先)차단 후(後)심의 링크 사이트 침해 간주	2026.5.11. (전면 8.11.)	문체부 장관· 저작권보호원	즉시 접속차단, 손해액 5배 배상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	불법촬영물 사전 필터링 대상을 동영상에서 이미지로 확대	2026.7.1. (계도 ~12.31.)	플랫폼· 특장값 자동 대조	시정명령· 과징금
정보통신망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규제 대상을 불법정보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대, 플랫폼 자율규제 의무 부과	2026.7.7.	방미통위· 플랫폼	손해액 5배 배상, 과징금 최대 10억

※출처: 각 법령 및 관련 보도

1) 경향신문, "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가결... '방송 3법' 중 EBS법만 남았다", 2025.8.21.(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 국민의힘 표결 불참); 전자신문, "방송3법 중 두번째 '방문진법' 국회 통과... 'EBS법'은 22일 처리 수순", 2025.8.21.; 조선일보, "[속보] '이진숙 자동면직' 방미통위 설치법 국회 통과... 여당 단독 처리", 2025.9.27.

2. 문제의식: 왜 ‘중첩 효과’인가

□ 개별법의 명분은 상이하나 규제 구조는 동일

세 제도가 내세우는 명분은 서로 다르다. 저작권법 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저작권 보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방미통위가 주관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역시 방미통위가 주관하는 허위정보 대응을 정책 목표로 표방한다. 목표만 놓고 보면 서로 무관한 세 갈래의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규제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즉 메커니즘 차원에서 보면 세 제도는 세 가지 설계를 공유한다. 첫째, 법원이 위법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려주기 전에 행정기관이나 기술적 수단이 먼저 차단한다. 둘째, 무엇이 규제 대상인지를 가르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셋째, 규제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과 책임이 민간에 넘겨진다.

그렇다면 분석의 초점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체로 개별 법률 하나하나가 위헌인지를 따지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세 제도가 동시에 작동할 때 이용자와 사업자가 체감하는 결과는 개별 규제를 따로 떼어 본 것의 단순 합과 같지 않다. 본 보고서가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로 이 지점, 즉 여러 제도가 겹쳐 작동할 때 나타나는 ‘체계 효과(system effect)’다.

II. 3법의 입법 경과와 핵심 내용

1. 정보통신망법 개정: 허위조작정보근절법

□ 입법 경과: 근절안 발표에서 시행까지 8개월 반

출발점은 2025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이었다. 이를 토대로 한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된 뒤 12월 24일 통과되었다. 표결 결과는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이었다.²⁾

주목할 대목은 반대·기권표의 출처다. 반대 3표는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기권 4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진보당 손술,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던졌다. 반대와 기권을 합한 7표 가운데 5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에게서 나왔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정당들과 그에 인접한 정당들 안에서도 이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개정법은 2026년 1월 6일 법률 제21305호로 공포되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7월 7일 시행되었다. 개정 범위는 좁지 않아서, 용어의 뜻을 정하는 정의 규정인 제2조를 포함해 여러 조문이 함께 손질되었다.³⁾

□ 핵심 조항 ①: '허위조작정보' 개념의 신설(제44조의7 제2항)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면서, 이를 용어 정의를 모아둔 제2조가 아니라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인 제44조의7에 제2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⁴⁾ 정의 규정이 아니라 금지 규정 안에 개념을 넣었다는 점 자체가 이 개념의 성격을 보여준다.

법이 정한 요건은 세 가지다. 우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정보’이거나,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한 ‘조작정보’에 해당해야 한다. 다음으로 그 정보가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그러한 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고의)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풍자와 패러디는 법문에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이 구조는 기존의 ‘불법정보’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불법정보는 정보의 내용 자체가 위법하면 성립하지만, 허위조작정보는 고의와 목적이라는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⁵⁾

2) 경향신문, "'악용 소지 논란' 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국힘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2025.12.24.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 2026.1.6. 공포, 2026.7.7. 시행.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 제44조의7 제2항(신설 2026.1.6.).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뒤집어 말하면, 실무에서는 ‘이 사람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가’,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는가’를 입증하는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같은 개정 안에서 규제의 확대와 축소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도 짚어둘 필요가 있다.⁶⁾ 축소된 부분은 명예훼손 정보의 범위다. 종전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까지 포함되던 것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좁혀졌다(제44조의7 제1항 제2호). 반대로 확대된 부분은 혐오표현이다. 혐오표현 정보가 불법정보의 한 유형으로 새로 들어왔다(같은 항 제2호의2).

□ 핵심 조항 ②: 손해배상·과징금 체계

배상 제도는 두 갈래로 설계되었다. 하나는 법정손해배상이다.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액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5,000만 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제44조의10 제2항).⁷⁾

다른 하나는 가중손해배상, 흔히 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실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했다.⁸⁾

다만 가중손해배상은 아무에게나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사실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면서 게시한 정보의 수, 구독자 수, 조회 수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게재자’로 한정된다. 또 고의와 목적, 법익 침해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에는 적용이 배제된다(제44조의10 제5항). 소송이 남용될 경우에 대비해, 피고가 중간판결을 신청해 소송 절차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두었다(제44조의11).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은 흔히 오해되는 것과 달리 플랫폼이 아니라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부과된다(제44조의24).⁹⁾ 부과 요건도 좁아서, 법원의 확정판결로 불법정보나 허위 조작정보로 인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핵심 조항 ③: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절차적 의무

개정법은 이용자 규모가 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게 별도의 절차적 의무를 지운다.¹⁰⁾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통지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보장할 것, 자체 운영정책을 수립할 것, 6개월에 한 번 이상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할 것 등이다. 방미통위는 이 의무들이 제대로 운용되는지 조사할 권한을 갖는다.

5) 김선희·김정원·장봉진·박상현(법무법인 율촌),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규제", 법률신문 로켓센터, 2026.2.3. 개정법 조문별 해설.

6)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명예훼손 정보의 범위를 '사실 적시'에서 '허위 사실 적시'로 축소) 및 제2호의2(혐오표현 정보의 불법정보 유형 신설).

7)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손해배상),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청구 남용에 대한 중간판결). 법정손해배상은 제44조의10 제2항, 가중(징벌적) 손해배상은 같은 조 제3항, 공익 목적 정보에 대한 적용 배제는 같은 조 제5항.

8) 앞의 각주 7의 자료 참조.

9)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과징금). 부과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며, 법원의 확정판결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에 한함.

10)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신고 및 조치), 제44조의14(투명성 보고서), 제44조의15(방미통위의 자료 요청·조사), 제2조 제1항 제3호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제3호의3(게재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직접적 과태료 규정은 두지 않았으나, 일반 시정조치명령 및 그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제64조 제4항)와 방미통위의 조사 권한이 적용됨.

흥미로운 점은 이 의무를 어겼을 때 곧바로 물릴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¹¹⁾ 다만 일반적인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제64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어, 제재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

□ 핵심 조항 ④: 시행령에 의한 규제 범위 확정(2026.7.7.)

여기서 법령의 위계를 잠깐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국회가 만드는 것이 법률이고, 그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부가 정하는 것이 시행령(대통령령)이며, 시행령이 다시 위임한 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제기관이 정하는 것이 고시다. 가이드라인은 그보다 아래에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석 지침이다. 본 브리프가 반복해서 지적하는 문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규제의 실제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인데, 그 출발점이 바로 시행령이다.

실제로 누가 규제를 받고 얼마나 강한 제재를 받는지를 좌우하는 핵심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었고,¹²⁾¹³⁾ 개정 시행령은 법 시행 당일인 2026년 7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되었다.

시행령이 확정한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간 정보매개 서비스’, 즉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다(제2조의2, 별표 1).¹⁴⁾ 가중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게재자는 유통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자 가운데, 구독자 등이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로 정해졌다(제35조의4).¹⁵⁾ 과징금 대상은 확정판결로 인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수익을 얻은 자다(제35조의11).¹⁶⁾

남용적인 배상 청구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인 ‘공인 등’의 범위도 함께 확정되었다(제35조의5).¹⁷⁾ 선거 후보자, 공공기관의 장,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가 포함되고, 정당의 대표자와 언론사 대표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대표이사·최대주주도 여기에 들어간다. 이들에 대한 비판은 상대적으로 넓게 허용된다는 취지다.

11) 앞의 각주 10의 자료 참조.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7.7.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으며, 같은 날 개정법이 발효됨.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제2조의2, 별표 1),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의 범위(제35조의4), ‘공인 등’의 범위(제35조의5), 신고 필수 기재사항(제35조의6), 사실확인 단체 규범(제35조의8), 투명성센터 업무(제35조의9), 과징금 부과 대상·산정기준(제35조의11, 별표 1의4)을 규정.

13) 법무법인(유) 세종 ICT그룹,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뉴스레터, 2026.7.9. 시행령 개정안 조문별 해설.

14) 앞의 각주 12의 자료 참조.

15) 상동.

16) 상동.

17) 상동.

과징금을 얼마로 매길지 정하는 산정기준은 시행령이 아니라 고시가 맞았고, 이 고시는 시행령과 함께 의결되었다.¹⁸⁾¹⁹⁾ 방미통위 제20차 전체회의(2026년 6월 29일)에서 제정안이 의결되면서 하위규범 정비가 일단락되었다. 산정은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 금액을 정한 뒤 필수적 가중을 하고, 다시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최종 부과액을 결정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고시는 방미통위 고시 제2026-22호로 2026년 7월 7일 제정·시행되었다.²⁰⁾²¹⁾ 중대성은 매우 중대·중대·보통·약한 위반행위의 4단계로 나뉜다. 판정에는 고의·과실, 유통의 방법 및 수단, 해당 정보의 유형, 피해 규모 및 정도, 취득한 이익의 정도라는 5개 평가항목이 쓰이며, 각 항목에는 0.2의 동일한 비중이 부여된다. 항목별 배점에 이 비중을 곱해 환산한 점수의 합계로 최종 단계가 정해지는 방식이다.

가중과 감경은 3단계 구조다.²²⁾ 확정판결 후 3회 이상 유통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50%가 반드시 가중된다. 여기에 조사를 방해했거나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정 등이 있으면 $\pm 50\%$ 범위에서 추가로 가중되거나 감경된다. 마지막으로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최대 90%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단계별 기준금액 자체는 시행령 [별표 1의4]에 규정되어 있다.²³⁾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3억~5억 원, 중대한 위반행위는 1억~3억 원 미만, 보통 위반행위는 2천만~1억 원 미만, 약한 위반행위는 5백만~2천만 원 미만이다. 다만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법이 정한 상한인 10억 원을 넘을 수는 없다.

-
- 18) 미디어오늘, "거짓으로 판명난 정보, 계속 유통해서 돈 벌면 과징금 최대 10억 원", 2026.6.30. 방미통위는 2026.6.29. 제20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제정안을 함께 심의·의결했으며, 입법·행정예고와 토론회를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힘.
- 19) 시행령 개정안 제35조의11 및 별표 1의4.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기준금액 산정 → 필수적 가중 → 추가적 가중·감경 → 부과과징금 결정의 순서로 산정하되, 구체적 사항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로 정하도록 재위임.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할 규범(제35조의8) 역시 방미통위 고시로 지정하도록 위임.
- 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제2026-22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2026.7.7. 제정, 발령한 날부터 시행. 제8조는 2027.1.1.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
- 21) 고시 제2026-22호 제3조·제4조 및 [별표 1]. 중대성은 5개 평가항목(고의·과실, 유통의 방법 및 수단, 해당 정보의 유형, 피해 규모 및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에 각 0.2의 동일 비중을 부여하고 항목별 상 30점 중 20점·하 10점을 배점해 합산하며, 합산 위반점수 25~30점은 매우 중대, 20점 이상 25점 미만은 중대, 15점 이상 20점 미만은 보통, 10점 이상 15점 미만은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 기준금액 자체는 시행령 [별표 1의4] 2. 가. 1)의 표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산정하도록 하여 고시에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22) 고시 제2026-22호 제5조(필수적 가중), 제6조 및 [별표 2](추가적 가중·감경), 제7조(부과과징금의 결정). 확정판결 후 2회 유통은 기준금액 유지, 3회 이상은 50%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은 $\pm 50\%$ 범위이며, 가중사유는 피해자에 대한 금품·부당조치 요구(30% 이내), 조사 중 위반행위 미중단(30% 이내), 조사 방해(20% 이내) 등, 감경사유는 조사 협력(30% 이내), 피해구제 조치(20% 이내), 자진 중단·시정(20% 이내) 등.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최대 90%까지 감경 가능.
-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4]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11 제2항 관련, 신설 2026.7.7.). 기준금액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보통 위반행위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약한 위반행위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필수적 가중은 기준금액의 50% 범위, 추가적 가중·감경은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이며,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조의24제1항의 상한(10억 원)을 넘을 수 없음.

두 단계의 가중을 모두 적용하면 최대 배율은 2.25배(1.5×1.5)가 된다.²⁴⁾²⁵⁾ 이를 역산하면, 법정 상한 10억 원에 도달하려면 기준금액이 4억 4,445만 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결국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되면서 확정판결 후 3회 이상 유통한 경우에만 상한에 달는다. 반대로 ‘약한 위반행위’는 최대한 가중해도 4,500만 원 수준에 머물고, 기준금액 하한인 5백만 원에서 최대 감경까지 받으면 100만 원 아래로 내려간다. 같은 제도 안에서 실제 부과액의 폭이 대단히 넓다는 뜻이다.

[표 2] 과징금 기준금액과 최대 가중 시 산정액

중대성	합산 위반점수	기준금액(시행령)	최대 가중 시
매우 중대	25점 이상~30점	3억~5억 원	6.75억~10억 원 (상한 적용)
중대	20점 이상~25점 미만	1억~3억 원 미만	2.25억~6.75억 원 미만
보통	15점 이상~20점 미만	2천만~1억 원 미만	4,500만~2.25억 원 미만
약한	10점 이상~15점 미만	5백만~2천만 원 미만	1,125만~4,500만 원 미만

※출처: 시행령 [별표 1의4] 및 방미통위 고시 제2026-22호. '최대 가중 시'는 필수적 가중 50%와 추가적 가중 50%를 모두 적용한 값(2.25배)

한편 사실 확인을 담당하는 단체가 지켜야 할 국제적 규범으로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원칙이 제시되었다.²⁶⁾ 중립성과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기준을 갖춘 단체만 협약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입법예고안(2026년 5월 12일)과 비교하면 최종안에서 규제 대상은 오히려 줄었다.²⁷⁾ 당초 포함되었던 검색 서비스와 오픈마켓이 빠지고 SNS·온라인 커뮤니티·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한정된 것이다. 다만 검색사업자라고 해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어서, 기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를 신속히 차단할 의무 등 정보매개자로서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

반대로 일부 규율은 강화되었다.²⁸⁾ ‘공인 등’에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이 추가되었고,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차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기준이 신설되었다.

24) 상동.

25) 앞의 각주 22의 자료 참조.

26) 미디어오늘, 앞의 기사, 2026.6.30.

27) 이수경·정호선·김상유·강석준·한재현·경기룡(법무법인 화우),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시행 및 가이드라인 발간", 법률신문 로켓센터, 2026.7.9. 시행령 최종안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의 조문별 해설 및 입법예고안 대비 변경사항 정리.

28) 상동.

□ 핵심 조항 ⑤: 가이드라인에 의한 해석 기준 제시(2026.7.8.)

방미통위는 시행령 시행과 함께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²⁹⁾³⁰⁾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지만, 규제기관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를 미리 밝힌다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사실상의 준거로 기능한다.

가이드라인이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 대상 서비스의 범위와 관련해, 개인 간 사적 대화나 메시지 중심의 폐쇄형 서비스는 제외되지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오픈채팅은 포함된다.³¹⁾ 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없으며 과징금은 게재자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이 명시되었다.³²⁾

언론중재법상 언론사 등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삭제나 접근차단 조치를 할 수 없는데, 여기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포함되고 이들이 직접 운영하는 SNS 계정이나 동영상 채널에도 같은 예외가 적용된다.³³⁾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관련 정보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정보처럼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보에는 가중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는다.³⁴⁾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미지 사전 필터링 의무

□ 제도 연혁: 'n번방 방지법'의 적용 범위 확대

이 제도의 뿌리는 2020년 6월 9일 공포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한 조항이다.³⁵⁾ 시행 전부터 '사전검열' 비판이 제기되어 오픈넷의 헌법소원과 커뮤니티의 반발이 이어졌다.³⁶⁾

그 뒤 2025년 10월 1일 시행령 제30조의6 제2항이 개정되면서, 조치 대상이 동영상에서 이미지 파일까지 확대되었다. 공교롭게도 3주 뒤인 2025년 10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관련 헌법소원(2021헌마290, 2021헌마1521 병합)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이 제도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³⁷⁾

2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2026.7.8. 발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범은 아니며, 방미통위가 법령 적용에서 기대하는 해석 방향과 실무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

30) 앞의 각주 27의 자료 참조.

31) 상동.

32) 상동.

33) 상동.

34) 상동.

3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 2020.6.9. 공포(이른바 'n번방 방지법'), 2025.10.1.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동영상에서 이미지 파일까지 확대.

36) 단비뉴스, 「n번방 방지법, 국내 사이트만 제재?」, 단비팩트체크, 2026.7.12.(수정 7.19.)

37) 헌법재판소 2025. 10. 23.자 2021헌마290 전원재판부 결정

다만 이 결정을 이미지 확대의 합헌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현재의 심판 대상은 2020년 12월 8일 대통령령 제31223호로 개정된 조항이었고, 이미지로 대상을 넓힌 부분은 애초에 현재의 판단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지 확대에 대한 위헌 심사에서는 ‘조치 대상의 확대’ 그 자체와 ‘절차적 통제의 부재’가 쟁점이 된다.

확대된 조치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며,³⁸⁾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예정되어 있다.

□ 적용 대상과 의무 내용

의무를 지는 사업자는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일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³⁹⁾ SNS와 커뮤니티, 인터넷 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국내 주요 커뮤니티와 포털은 사실상 전부 포함된다.

조치의 핵심은 게시 전 단계에서 국가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와 특징값을 자동으로 대조하는 사전 필터링 구조다. 여기서 특징값(해시)이란 파일 자체를 저장하지 않고도 같은 파일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뽑아낸 일종의 디지털 지문을 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의 특징값과, 이용자가 올리려는 정보의 특징값을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사람이 게시물의 내용을 직접 열람하거나 인공지능이 성적 표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며, 대상도 불법촬영물·딥페이크·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한정된다. 성인물 일반은 대상이 아니다. 이 지점에서 실제 쟁점은 다른 곳에 있다. 어떤 해시값이 국가 DB에 등재되는지에 대해 외부에서 검증하거나 되짚어 감시할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등재 단계의 오류를 걸러낼 장치가 없다면, 필터링의 정확성은 검증 불가능한 채로 남는다.

의무 자체는 국내외 사업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만 집행 수단에서는 격차가 발생한다.⁴⁰⁾ 국내에 법인이나 자산이 없는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징수하거나 사업정지를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미통위 역시 이러한 집행상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

□ 논란의 촉발: 루리웹 공지(2026.4.30.)

제도 자체는 2025년에 개정되었지만, 인터넷 검열 강화 논란이 본격적으로 점화된 계기는 2026년 4월 30일 루리웹 웹마스터 진인환의 공지였다.⁴¹⁾ 공지의 요지는 세 가지였다.

38) 앞의 각주 36의 자료 참조.

39) 상동.

4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촬영물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 이미지 확대 시행 관련 발표, 2026.6.11.

41) 루리웹 운영진 공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 확대 시행", 2026.4.30.

앞으로 모든 영상과 이미지가 사전 필터링을 거쳐야 한다는 것, 정작 불법촬영물은 의무 대상 사이트에 거의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과도한 부담 때문에 서비스에 지장이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부담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필터링 인프라 비용이 전액 사업자 몫이기 때문이다.⁴²⁾ 서버와 GPU 등 장비 구입비가 소규모 커뮤니티에는 수천만 원대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3. 저작권법 개정: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제

□ 입법 내용: 선(先)차단 후(後)심의 체계 도입

개정 저작권법의 골자는 세 가지다.⁴³⁾ 첫째, 불법복제물 링크 사이트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 자체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한다(제124조 제1항 제4·5호). 둘째,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불법사이트에 대해 긴급차단제를 신설했다(제133조의2~제133조의4). 셋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

시행일은 규정별로 이원화되었다. 긴급차단과 접속차단 관련 규정은 2026년 5월 11일 먼저 시행되었고, 나머지 규정은 2026년 8월 11일 시행되었다.

제도의 작동 방식은 이름 그대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적발 즉시 임시 차단을 명령하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는 구조다.⁴⁴⁾ 종전에는 신고에서 차단까지 최소 2~3주, 길게는 38일이 걸렸는데, 이 절차가 사실상 즉시 차단으로 바뀌었다.

□ 시행 초기 집행 현황

시행 첫날인 2026년 5월 11일 문체부는 34개 사이트에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했다.⁴⁵⁾ 웹툰·웹소설을 불법으로 게시해 온 '뉴토끼' 등이 대상이었다.

그에 앞서 문체부 장관이 저작권보호원을 현장 방문한 2026년 4월 27일을 전후해서는 자진 폐쇄와 이른바 '풍선효과'가 동시에 관측되었다.⁴⁶⁾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가 일제히 서비스를 종료한 한편, 제도 시행 전의 공백기를 노린 유사 사이트가 다수 재등장한 것이다.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게시자나 책임자는 차단일부터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차단은 즉시 해제된다.⁴⁷⁾⁴⁸⁾ 그럼에도 구조적 우려는 남는다. 행정기관의 판단이 법원의 심사보다 먼저 이루어진다는 점은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는 쟁점이기 때문이다.

42) 에픽코리아, 「커뮤니티 공격에 대한 입장」, 2026.5.28.

43) 법무법인 광장,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법률신문 로켓센터, 2026.3.9.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4·5호, 제133조의2~제133조의4 등.

44) 전자신문, "불법 사이트, 이제는 즉시 막는다...긴급차단제 11일 시행", 2026.5.10.

45)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관련 발표, 2026.5.11., 디지털타임스·SBS·경향신문·전자신문(2026.5.11.)

46) 뉴스1, "자진폐쇄 비웃듯 '뉴토끼' 재등장...긴급차단 앞두고 두더지 게임", 2026.5.6.

47)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저작권 침해 긴급차단제,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모든 것", 2026.5.28. 이의제기는 차단일부터 5일 이내(저작권법 제133조의4 제3항), 이의제기 시 즉시 해제(같은 조 제4항).

48) 얼리어답터뉴스, "2026년 5월 11일 시행 개정 저작권법, 불법복제물 긴급 차단·징벌적 손해배상으로 K-콘텐츠 보호 강화", 2026.5.17.

지금까지 살펴본 세 제도의 입법과 시행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온라인 규제 3법 주요 타임라인

일자	주요 내용
2025.10.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기술적 조치 대상 동영상 → 이미지 확대 (2026.7.1. 시행)
2025.10.20.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2025.10.23.	헌재, 2021헌마290·2021헌마1521(병합) 기각·각하 (2020년 시행령 조항 대상)
2025.12.24.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재석 177, 찬성 170, 반대 3, 기권 4)
2025.12.31.	미 국무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심각한 우려' 공식 입장문
2026.1.6.	개정 정보통신망법 공포(법률 제21305호). 부칙상 시행일 2026.7.7.
2026.1.15.	국민의힘,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안·온라인 접속국가표시법 당론 발의 → 의원 107인, 대표발의 최형두·김장겸
2026.1.29.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2.10.	개정 저작권법 공포(긴급차단·접속차단 3개월, 그 외 6개월 유예)
2026.4.27.	문체부 장관 저작권보호원 현장 방문 → 뉴토끼 등 자진 폐쇄, 유사 사이트 재등장
2026.4.30.	루리웹, 이미지 사전 필터링 의무 확대 공지 → 인터넷 검열 논란 본격 점화
2026.5.11.	저작권법 긴급차단제 시행, 첫날 34개 사이트 긴급차단 명령 통지
2026.5.12.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당초 검색 서비스·오픈마켓 포함)
2026.6.29.	방미통위 제20차 전체회의, 시행령 개정안·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제정안 의결 (검색·오픈마켓 제외로 대상 축소)
2026.7.1.	이미지 사전 필터링 의무 시행(계도기간 2026.12.31.까지)
2026.7.6.	국민의힘 지도부, 검은 마스크 착용 최고위... '온라인 입틀막법' 규정
2026.7.7.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민의힘 헌법소원 청구 방침 및 재개정 추진 발표
	변호사 헌법소원 접수
2026.7.8.	방미통위 가이드라인 발간
2026.7.21.	변호사 등 개인 청구인 접수 헌법소원 2건 각하
2026.8.11.	개정 저작권법 전면 시행(징벌적 손해배상 등 잔여 규정)

※출처: 각 법령·보도 종합

Ⅲ. 중첩 효과 분석: 5대 핵심 쟁점

1. '사실상의 사전검열' 체계의 구조화

□ 3중 관문 구조: 업로드 → 유통 → 사이트

세 제도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은 세 개의 관문을 차례로 통과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첫 번째 관문은 업로드 단계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이미지 사전 필터링이 여기서 작동한다. 두 번째 관문은 유통 단계다. 플랫폼은 신고 처리와 자율규제 부담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게시물을 미리 조치할 유인을 갖게 되고, 업(業)으로 활동하는 게재자는 확정판결 이후에도 반복해서 유통할 경우 과징금 위험을 진다. 세 번째 관문은 사이트 단계로, 저작권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사이트 접속 자체를 즉시 차단할 수 있다.

각각의 관문은 스스로를 '예외적 조치'라고 설명한다. 긴급한 경우에만, 명백한 침해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 관문이 상시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이용자가 체감하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상시적인 심사 체계다. 게시하기 이전이나 직후에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역할을 위임받은 기술과 플랫폼이 콘텐츠를 들여다보는 구조가 일상이 되기 때문이다.

□ 헌법 법리: 검열금지의 절대성과 4대 요소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다.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말하는 검열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표현물이 발표되기 이전에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로 정의해 왔다.⁴⁹⁾ 그리고 어떤 제도가 검열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네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허가를 받기 위해 표현물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 절차가 있을 것, 허가받지 않은 의사표현이 금지될 것, 그리고 이 심사 절차를 관철할 강제수단이 있을 것이다.

검열금지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그 성격 때문이다. 현재는 검열금지를 과잉금지 심사, 즉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절하면 허용된다'는 식의 이익형량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절대적 금지로 취급한다. 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 제도는 다른 사정을 따질 것 없이 위헌이 된다는 뜻이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3법 가운데 검열의 4대 요소와 구조적으로 가장 닮은 것은 이미지 사전 필터링이다.⁵⁰⁾ 업로드 시점에 표현물이 제출되고, 기술적 자동 대조라는 형태의 사전심사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과하지 못한 표현은 게시가 금지되고, 그 배후에는 과징금이라는 강제수단이 놓여 있다.

49) 헌재 1996.10.4. 93헌가13·91헌바10(병합) 결정(영화 사전심의 위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①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 제출의무, ②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③허가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④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검열의 4대 요소로 제시.

50) 박경신, 『표현·통신의 자유: 이론과 실제』, 논형, 2013.

□ 사법 판단 전 단계의 행정·기술·플랫폼 개입 확대

세 법은 온라인 표현의 일부 단계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보다 행정기관과 기술, 플랫폼의 개입이 먼저 이루어지는 구조를 공유한다. 긴급차단과 사전 필터링, 플랫폼의 자율조치는 모두 사법적 최종판단 이전 단계에서 작동한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게재자에 대한 과징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제재 구조는 게재자와 플랫폼으로 이원화되어 있다.⁵¹⁾⁵²⁾⁵³⁾ 언론사나 유튜버 등 게재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과 5배 가중배상을 직접 부담한다. 반면 대규모 플랫폼은 신고 처리와 자율 운영정책 수립, 투명성 보고 같은 절차적 의무를 지고 방미통위의 조사 권한이 적용된다.

그 결과 표현의 위축은 두 갈래 경로로 발생한다. 게재자에게는 고액의 배상과 과징금이 직접적인 자기검열의 유인으로 작용한다. 플랫폼에게는 조사와 시정조치, 그리고 평판 위험을 피하려는 동기가 작용해 경계선에 있는 콘텐츠를 미리 삭제하게 만든다. 국가가 직접 검열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 이론적 준거: '신형 표현규제'와 부수적 검열

이러한 현상은 이미 이론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발킨(Balkin)은 국가가 화자를 직접 처벌하는 대신 플랫폼과 인프라 사업자를 압박해 표현을 통제하는 방식을 '신형 표현규제(new-school speech regulation)'로 개념화했다.⁵⁴⁾ 그리고 중개자가 자신에게 가해질 제재를 피하려고 이용자의 적법한 표현까지 삭제해 버리는 현상을 '부수적 검열(collateral censorship)'이라고 불렀다. 3법의 과징금·배상 설계는 이 전형에 그대로 해당한다.

인접한 이론도 직접 적용된다. 크라이머(Kreimer)는 표현의 유통망에서 법적 압박에 가장 취약한 중개자, 즉 '가장 약한 고리'를 겨냥하는 규제는 결국 대리 검열(censorship by proxy)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⁵⁵⁾ 샤휌(Schauer)는 제재 기준이 불확실하면 사람들이 적법한 표현마저 스스로 억제하게 된다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 이론을 정식화했다.⁵⁶⁾

51) 앞의 각주 7의 자료 참조.

52) 앞의 각주 9의 자료 참조.

53) 앞의 각주 10의 자료 참조.

54) Jack M. Balkin, "Old-School/New-School Speech Regulation", 127 Harvard Law Review 2296 (2014); Jack M. Balkin, "Free Speech Is a Triangle", 118 Columbia Law Review 2011 (2018). 발킨은 국가가 화자를 직접 처벌하는 대신 인프라·중개자를 압박해 표현을 통제하는 방식을 '신형 표현규제(new-school speech regulation)'로 개념화하고, 그 결과를 '부수적 검열'과 '디지털 사전제한(digital prior restraint)'으로 분석. 다만 '부수적 검열(collateral censorship)'이라는 용어 자체는 Michael I. Meyerson, "Authors, Editors, and Uncommon Carriers", 71 Notre Dame Law Review 79, 118 (1995)이 처음 명명한 것으로, 발킨은 이를 온라인 중개자 규제에 적용.

55) Seth F. Kreimer, "Censorship by Proxy: The First Amendment, Internet Intermediaries, and the Problem of the Weakest Link", 155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1 (2006). '대리 검열(censorship by proxy)' 개념의 최초 정식화.

56) Frederick Schauer, "Fear, Risk and the First Amendment: Unraveling the 'Chilling Effect'", 58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685 (1978). 제재의 불확실성이 적법한 표현까지 자기검열하게 만드는 위축효과 이론의 고전적 정식화.

켈러(Keller)가 정리한 실증 연구들은 이 우려가 이론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플랫폼의 과잉 삭제는 예외적 사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향이라는 것이다.⁵⁷⁾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부과되는 의무가 실질적으로는 검열을 민간에 위탁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 제도가 공통의 설계를 공유하고 있음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4] 3법의 규제 구조 비교: 공통 설계의 확인

구분	저작권법 긴급차단	이미지 사전 필터링	허위조작정보근절법
1차 판단 주체	문체부 장관 ·저작권보호원(행정)	플랫폼의 자동 대조 시스템 (기술)	게재자 상대 법원, 플랫폼 상대 방미통위·자율규제
개입 시점	유통 중 즉시 차단 (선차단 후심의)	게시 이전 (사전 필터링)	유통 후 제재 (위축효과는 사전 발생)
사법 통제	사후 이의제기(5일) ·행정소송	사실상 부재 (오탐 구제 절차 미비)	게재자 과징금: 확정판결 선행 / 플랫폼 조치: 이의절차·사후 쟁송
비용 부담	ISP·CDN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전액	플랫폼·표현 주체
판단 기준	'명백한 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DB 등재 여부 (등재 목록 비공개)	고의·목적 요건 + 불확정 개념·공공의 이익 침해 등)

※출처: 각 법령 및 보도 종합

2. 위헌성: 명확성·과잉금지·검열금지 원칙과의 충돌

□ 명확성 원칙 위반 소지

명확성 원칙이란 국가가 무엇을 금지하는지 국민이 미리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다. 이 점에서 개정법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고의·목적 요건을 두고 풍자·패러디 제외를 명문화함으로써 규제 범위를 한정하려 시도했기 때문이다.⁵⁸⁾ 따라서 이 법을 두고 아무런 기준 없이 백지로 위임한 규정이라고 비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핵심 개념의 불명확성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⁵⁹⁾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은 그 자체가 평가를 필요로 하는 불확정 개념이다.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곧 조작정보는 통상적인 편집이나 요약, 인용과 어디서 갈라지는지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면제 대상인 ‘풍자와 패러디’가 어디까지인지도 법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결국 정치적 비판이나 의혹 제기, 논평이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

57) Daphne Keller, "Empirical Evidence of Over-Removal by Internet Companies Under Intermediary Liability Laws: An Updated List", Stanford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CIS) 블로그 게시물, 2021.2. (최초 게시 2015.10.). 중개자 책임이 강할수록 플랫폼이 적법 콘텐츠까지 과잉 삭제한다는 실증 연구들을 종합. 학술지 논문이 아닌 연구기관 게시물임에 유의.

58) 앞의 각주 4의 자료 참조.

59) 앞의 각주 4의 자료 참조.

따라서 쟁점은 '제한하는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었느냐'다.⁶⁰⁾ 현재는 금지되는 표현이 불명확하면 사람들이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해 왔다. 불확정 개념이 형벌이나 고액 배상과 결합할 때 과연 예측이 가능한지가 심사의 대상이 된다.

□ 과징금 산정기준이 '정보의 정치적 성격'을 가중 요소로 삼는 문제

앞서 본 과징금 고시의 [별표 1] 세부평가 기준표는 '해당 정보의 유형'을 5개 평가항목 중 하나로 배치하고 0.2의 비중을 부여한다.⁶¹⁾ 문제는 그 안의 배점 기준이다. 국가안전, 민주적 사회질서, 개인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상(30점), 정책 왜곡, 재난, 공중보건 등 사회적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중(20점),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 관한 사안 등이 하(10점)로 매겨져 있다.

이 배점 구조에서는 국가정책이나 안보, 사회질서와 관련된 정보가 구조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사인(私人) 간의 명예훼손보다 더 높은 배점이 붙는 것이다. 그 결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가 '정책 왜곡'으로 평가되면, 허위의 정도가 같더라도 더 무거운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다.

특히 '민주적 사회질서'라는 표현은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개념과 구조가 유사하다.⁶²⁾ 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공공의 안녕질서'가 그것이다. 당시 현재는 이처럼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국가가 표현의 허용 여부를 재단하면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합산 위반점수의 하한은 10점, 즉 모든 항목에서 최하 평가를 받은 경우다.⁶³⁾ 이는 최하 평가를 받더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아예 빠지지 않는 구조라는 뜻이다.

60) 현재 2010.12.28. 2008헌바157·2009헌바88(병합) 결정(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현재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던 조항에 대해, '공익'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예측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표현행위가 위축된다는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순위헌을 선고. 해당 조항은 2015.12.22. 개정으로 삭제.

61) 고시 제2026-22호 [별표 1] 세부평가 기준표 중 '해당 정보의 유형' 항목. 상(30점)은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 민주적 사회질서, 개인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중(20점)은 '해당 정보가 정책 왜곡, 재난, 공중보건 등 사회적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하(10점)는 '해당 정보가 특정 개인 또는 소수 집단에 관한 사안인 경우 등'으로 규정.

62) 현재 2002.6.27. 99헌마480 결정(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위헌확인).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이라는 개념이 불명확·광범위하여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규제 대상을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시. 현재는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대적·가변적 개념을 잣대로 국가가 표현의 허용 여부를 재단하면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시.

63) 앞의 각주 21의 자료 참조.

□ 상위법령에 없는 평가 표지를 고시가 추가한 문제(위임범위 일탈 소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정치적 배점이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다. 시행령 [별표 1의4]를 보면 정보의 정치적 성격을 평가하는 표지(標識)가 없다.⁶⁴⁾ 시행령은 중대성 판단 요소로 고의·과실 여부, 유통정보의 내용 및 정도, 유통의 방법과 수단, 피해 규모와 정도, 취득한 경제적 이익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고시는 이 목록을 그대로 받지 않았다.⁶⁵⁾⁶⁶⁾ 시행령의 '유통정보의 내용 및 정도'를 '해당 정보의 유형'으로 바꾸어 놓고, 그 안에 '국가안전·민주적 사회질서'(상)와 '정책 왜곡'(중)이라는 기준을 새로 만들어 넣었다. 상위법령이 예정하지 않은 기준을 하위 규범인 고시가 창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

이 차이는 문언상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다.⁶⁷⁾ 시행령의 문언만으로는 정보의 정치적 성격이 제재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고시를 적용하면 정부 정책 비판이 '중'(20점)으로 평가되어 한 단계 위의 구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구간 사이의 기준금액 격차는 약한 위반의 5백만 원에서 매우 중대한 위반의 5억 원까지, 최대 100배에 이른다.

[표 5] 과징금 중대성 판단의 '해당 정보의 유형' 배점 구조

배점	고시상 판단 기준	해당 가능 정보
상(30점)	국가안전, 민주적 사회질서, 개인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안보·체제 관련 주장
중(20점)	정책 왜곡, 재난, 공중보건 등 사회적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부 정책 비판·의혹 제기
하(10점)	특정 개인 또는 소수 집단에 관한 사안 등 '상',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인 간 명예훼손

※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제2026-22호 [별표 1] 세부평가 기준표를 재구성. '해당 가능 정보'는 필자의 해석

64) 시행령 [별표 1의4] 2. 가. 2)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요소로 '고의·과실 여부, 유통정보의 내용 및 정도, 유통의 기간·전파의 정도 등 유통의 방법과 수단, 피해 규모와 정도, 위반행위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열거하고, 같은 표 3.은 세부 기준을 방미통위 고시에 위임. 시행령 문언에는 정보의 정치적 성격을 평가하는 표지가 없음.

65) 앞의 각주 61의 자료 참조.

66) 앞의 각주 64의 자료 참조.

67) 앞의 각주 23의 자료 참조.

□ 법률상 명문 예외가 행정 가이드라인으로 축소된 문제

법률은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⁶⁸⁾ 그런데 방미통위 가이드라인은 풍자·패러디라 하더라도 허위조작정보의 3요건, 즉 허위·조작성에 대한 인식과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이익 목적, 그리고 법익 침해를 모두 갖추면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⁶⁹⁾

국회가 법률로 설정한 면제 영역을, 구속력이 없는 행정 문서가 사실상 좁히는 구조인 셈이다. 표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는 단순하다. 법조문만 읽어서는 자신이 만든 풍자물이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⁷⁰⁾

가이드라인은 형식상 구속력이 없지만 실무에서는 우선 적용될 개연성이 높다.⁷¹⁾ 플랫폼이 자율 운영정책을 세울 때의 기준이 되고 방미통위 조사의 사실상 준거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명확성 원칙을 심사할 때에도 법률만이 아니라 가이드라인까지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 위헌 선례와의 관계: 동일 구조의 반복

현재는 이미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을 규제하던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른바 불온통신 결정이다.⁷²⁾⁷³⁾ 개념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번 개정법의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개념 정의도 구조가 유사하므로, 같은 위헌 선례의 사정거리 안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직접적인 선례는 이른바 ‘미네르바 결정’이다.⁷⁴⁾ 현재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단순위헌을 선고했다. ‘공익’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해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예측할 수 없고 그 결과 표현이 위축된다는 이유였다. 해당 조항은 이후 삭제되었다.

이 선례에 비추어 보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위헌으로 선언된 구조를 제재 방식만 바꾸어 다시 들여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⁷⁵⁾ ‘허위 사실+공익 침해’라는 골격은 유지한 채, 제재 수단을 형사처벌에서 징벌적 배상과 과징금으로 전환한 셈이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에서 이 선례를 어디까지 원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68) 앞의 각주 27의 자료 참조.

69) 앞의 각주 29의 자료 참조.

70) 앞의 각주 29의 자료 참조.

71) 앞의 각주 27의 자료 참조.

72) 앞의 각주 62의 자료 참조.

73) 황성기, 「불온통신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법률』 통권 제15호, 법무부, 2003.

74) 앞의 각주 60의 자료 참조.

75) 앞의 각주 60의 자료 참조.

실제로 시행 첫날 접수된 헌법소원도 명확성 원칙 위반을 주된 취지로 삼았다.⁷⁶⁾ 혐오 표현 관련 조항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 같은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었다. 다만 이 2건은 2026년 7월 21일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었다. 각하 사유는 직접성·현재성 등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본안 심사를 받으려면 구체적인 적용·집행 사례와 청구인 적격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임이 확인된 셈이다.

국제기구의 지적도 이미 있었다. UN 의사표현자유특별보고관은 2021년 유사한 입법이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허위정보 정정의 명확화, 징벌적 배상의 비례성, 독립적 사법 심사의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⁷⁷⁾ 현행법은 이 권고를 대부분 반영하지 않은 채 제정되었다.

□ 과잉금지·검열금지 원칙 위반 소지

과잉금지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수단이 적합해야 하며, 침해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제한으로 얻는 공익과 잃는 사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요구다. 이 가운데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해, 손해액 5배 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그리고 고시 [별표 1]의 정치적 배점은 위반 소지가 있다. 정정보도 청구나 일반 손해배상처럼 표현을 덜 제약하면서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익 균형성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의 쟁점이 재현될 전망이다.⁷⁸⁾ 당시 현재는 공익 실현 효과가 실증되지 않은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면 법익의 균형성을 잃는다고 판시했다. 이미지 필터링에도 같은 질문이 적용된다. 의무 대상에 포함된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 수단이 제한적이고, 다크웹 등 비제도권 유통은 애초에 규율 범위 밖이다. 그렇다면 전면 필터링이 실제로 달성하는 공익과, 국내 이용자·사업자가 지는 제약 사이의 비례관계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검열금지 원칙과 관련해서는 이미지 사전 필터링이 3법 중 정면 충돌 가능성이 가장 크다.⁷⁹⁾ 게시 이전 단계에서 일률적인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이다. 게다가 2025년 10월 현재의 기각·각하 결정으로 동영상 필터링을 둘러싼 다툼이 일단락된 상태에서, 적용 범위만 시행령으로 확대되었다. 국회의 통제를 우회했다는 절차적 문제까지 함께 놓여 있는 것이다.

76) SBS, "'개정 정통망법' 헌법소원 각하..."구체적 기본권 침해 없어", 2026.7.22.

77) UN OHCHR, Irene Kha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개서한(Communication AL KOR 5/2021), 2021.8.27.

78) 현재 2012.8.23. 2010헌마47·252(병합) 결정(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재판관 전원일치). 현재는 입법목적 달성을 덜 침해적인 수단(정보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이 존재함에도 적용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한 본인확인제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

79) 앞의 각주 36의 자료 참조.

긴급차단제는 상대적으로 통제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⁸⁰⁾ ‘명백한 침해’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발동 요건이 있고 사후심의와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행정기관의 판단이 사법 심사에 선행하는 구조 자체는 정부의 설명자료에서도 ‘구조적 우려’로 인정되고 있다.

3. 오검열과 비용 전가: 플랫폼 생태계 위축

□ 사전 필터링의 오탐(誤探) 리스크

필터링이 엉뚱한 게시물을 걸러내는 오탐 위험은 두 갈래 경로에서 발생한다. 첫째는 등재 오류 경로다. 국가 DB에 어떤 특징값이 등재되는지에 대해 외부에서 검증하거나 되짚어 감시할 절차가 없기 때문에, 등재 단계에서 생긴 오류가 곧바로 게재 차단으로 이어진다. 둘째는 보완 판별 경로다. 특징값 대조만으로는 새로 유통되는 자료를 잡아내지 못하므로 사업자가 자체 AI 판별 모델을 함께 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계열의 모델에서는 수영복 사진이나 밈, 심지어 수학 문제 이미지까지 차단한 오탐 전력이 보고된 바 있다.⁸¹⁾

규제의 실효성과 집행력이 어긋난다는 점도 문제다.⁸²⁾ 조치 의무 자체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부과되어 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 사업자는 물론 구글·메타·엑스(X) 등 해외 플랫폼도 적용 대상이 된다.⁸³⁾ 그러나 국내에 법인이나 자산이 없는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징수나 사업정지를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어렵고, 다크웹 등 비제도권 유통은 규율 범위 밖에 있다. 결국 준수 비용과 서비스 위축 압력은 다른 선택지가 없는 국내 중소기업자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된다.

□ 비용의 전면 민간 전가

필터링 장비 비용은 정부 지원 없이 전액 사업자가 부담한다.⁸⁴⁾ 데이터센터급 GPU 같은 장비를 정부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 커뮤니티는 수천만 원대의 초기 투자와 상시 운영비를 떠안게 된다. 이는 서비스 축소나 폐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겪는 불편도 있다. 업로드 시간이 지연되고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이용자 이탈로, 다시 광고 수익 감소로, 나아가 커뮤니티 생태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대형 플랫폼의 대응 방향도 짚어둘 필요가 있다. 조사와 시정조치, 평판 위험에 노출된 대형 플랫폼일수록 경계선에 있는 콘텐츠를 미리 조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허위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기 쉬운 정치·시사 콘텐츠일수록 위축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80) 앞의 각주 47의 자료 참조.

81) 에팸코리아, 「불법 촬영물에 대한 n번방 방지법 검열 적용 결과」, 2023.4.11., 「커뮤니티 공격에 대한 입장」, 2026.5.28.

82) 앞의 각주 40의 자료 참조.

83) 상동.

84) 앞의 각주 42의 자료 참조.

4. 국제 통상·외교 마찰의 현실화

□ Cloudflare, USTR 의견수렴에서 한국 CDN 규제를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주장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 CDN) 사업자인 Cloudflare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6년판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의견수렴(2025년 제출)에 처음으로 참여해 한국을 무역장벽 사례로 적시했다.⁸⁵⁾ 다만 지적 대상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문제 삼은 것은 CDN에 불법정보 접근제한 의무를 부과한 2023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이며, 2026년의 규제 3법 자체는 아니다.

의견서의 취지는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 CDN 사업자에게 150만 건이 넘는 URL 차단 목록을 보내고 매달 3만 건씩 추가하면서 ‘전례 없는 준수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Cloudflare는 이를 이탈리아의 Piracy Shield, 스페인의 IP 대역 차단, 프랑스의 자동 차단 입법과 나란히 제시했다.

□ 미 국무부의 공식 우려 표명

미 국무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⁸⁶⁾ 공공 외교 차관은 이 법이 규제 당국에 주관적 검열 권한을 부여하고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국무부 대변인은 2025년 12월 31일 공식 입장문에서 미국 기반 플랫폼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조야에서도 우려가 확산되었다.⁸⁷⁾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해당 법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이른바 조인트 팩트시트의 정신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의 글로벌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비교의 준거로 자주 언급되는 EU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대비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진다.⁸⁸⁾ DSA는 대형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 대응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포괄적·일반적인 사전 감시 의무는 금지하고, 알고리즘 투명성과 영향평가를 요구한다. 그에 비해 한국 3법은 사전 개입의 강도가 높고 절차적 통제가 약한 유형에 속한다.

85) TorrentFreak, 「Cloudflare Tells U.S. Govt That Foreign Site Blocking Efforts Are Digital Trade Barriers」, 2025.11.6. 및 첨부 의견서 원문(PDF)

86) 중앙일보, "[단독] 미국무부, 韓정통방법 저격 '검열권 우려...기술협력 위협'", 2025.12.31., 뉴스페이스, "미국, 한국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강력 제동", 2026.1.2.

87)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정신과 충돌할 소지를 지적. 뉴스페이스, 2026.1.2.

88) European Union, Regulation (EU) 2022/2065 (Digital Services Act),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277, 2022.10.27. DSA 제8조는 중개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일반적 감시 의무(general monitoring obligation) 및 능동적 사실조사 의무의 부과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제16조 이하에서 신고·조치(notice and action) 절차, 삭제 사유 고지, 내부 이의제기, 투명성 보고 의무를 규정.

5. 온라인 여론: 진영을 넘어선 반발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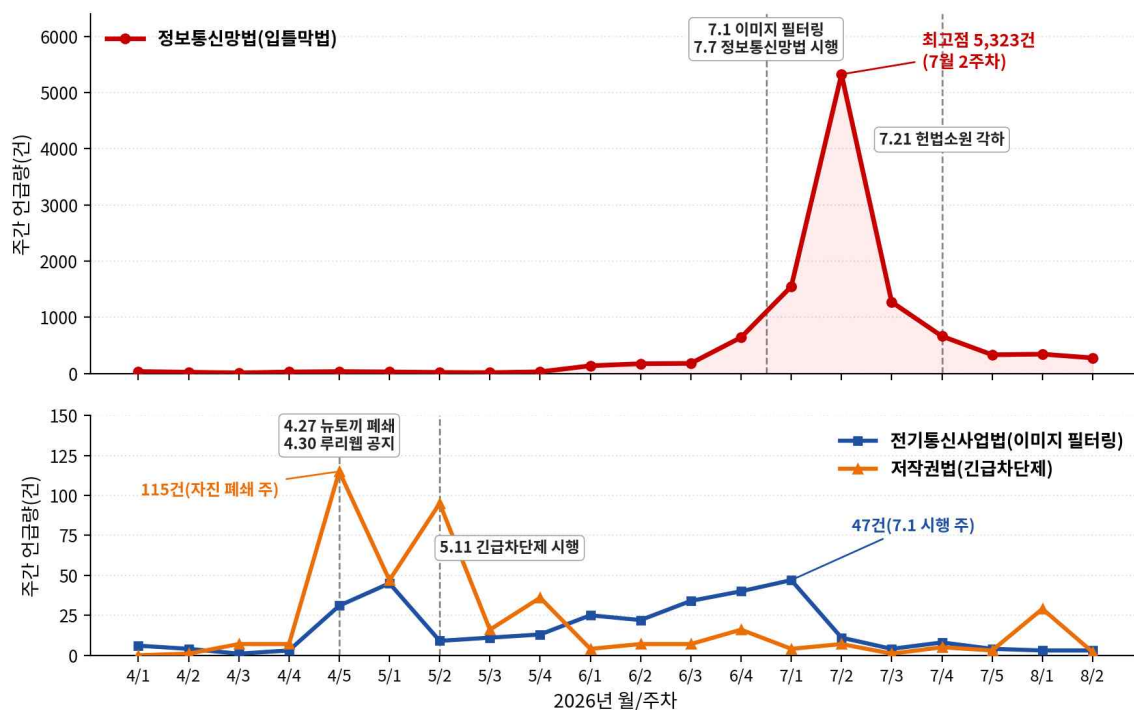
□ 언급량 추이: 시행 일정과 동조화된 급등, 시행 후에도 평시 미복귀

온라인 여론은 제도의 시행 일정과 뚜렷하게 동조하며 움직였다.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입틀막법의 주간 언급량은 시행 직후인 7월 2주차에 5,323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⁸⁹⁾ 이는 4~5월 평시의 주 평균 약 25건과 비교하면 약 213배에 이르는 규모다.

주목할 점은 급등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행 한 달 뒤인 8월 2주차에도 277건으로 평시의 약 11배 수준을 유지했다. 또 급등은 시행 이전부터 선행해서 나타났는데, 6월 4주차에 642건을 기록해 전주의 180건 대비 3.6배로 늘었다.

저작권법(긴급차단제)은 양상이 다르다.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시점은 시행일이 있던 5월 11일 주(95건)가 아니라, 뉴토끼 등이 자진 폐쇄하던 4월 5주차(115건)였다. 제도의 시행 자체보다 이용자가 직접 체감한 사건이 여론을 촉발했음을 보여준다. 전기통신사업법(이미지 필터링)도 같은 패턴이었다. 루리웹 공지가 있던 4월 5주차의 31건 가운데 19건(61%)이 커뮤니티에서 나와 확산을 주도했다.

[그림 1] 온라인 규제 3법 관련 주간 언급량 추이(2026.4.1.~8.16.)



※ 출처: 여의도연구원 트렌드 분석 및 빅데이터실(뉴스·커뮤니티·카페·SNS·유튜브·블로그, 주 단위). 전기통신사업법은 포함어 '필터링'으로 한정 채추출

89) 여의도연구원 트렌드 분석 및 빅데이터실 자체 분석(썬트렌드 활용)

- 분석 기간 2026.4.1.~8.16.(20개 주차). 분석 채널은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티스토리,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언론사 뉴스 등 10개
- 주제어는 정보통신망법 '입틀막법', 저작권법 '긴급차단제',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포함어 '필터링'. 수집 문서 모집단 약 7억 2,048만 건. 분석 대상 언급량은 정보통신망법 11,114건·저작권법 409건·전기통신사업법 324건(합계 11,847건)
- 감성 분석 규모는 정보통신망법 38,081건(부정 26,014건)·저작권법 2,265건(부정 1,002건)·전기통신사업법 1,076건(부정 482건)으로 모두 주 단위 집계. 연관어 추출 규모는 정보통신망법 3,384개·저작권법 451개·전기통신사업법 747개 어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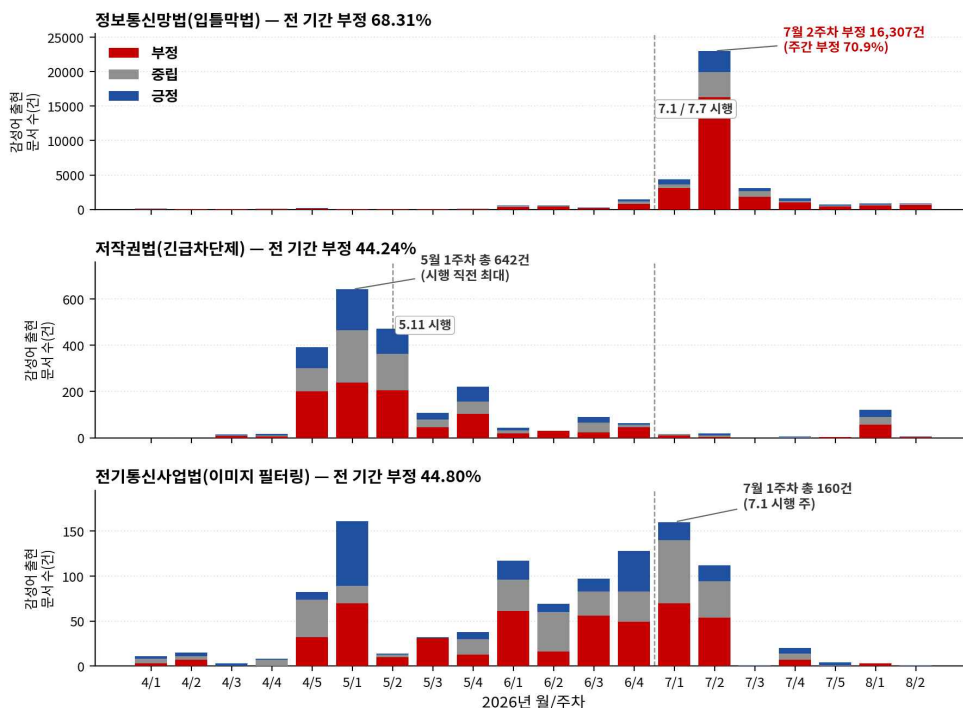
□ 감성 분석⁹⁰⁾: 3법 모두 부정 우위, 정보통신망법에서 압도적

감성 분석 결과는 세 법 모두 부정 여론이 우세하지만 그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보통신망법의 전 기간 감성 구성은 부정 68.31%, 중립 17.20%, 긍정 14.48%였다. 최대 급등기였던 7월 2주차의 주간 부정 비율은 70.9%로 전 기간 평균을 웃돌았다. 전 기간 부정 절대량도 26,014건에 달해 저작권법(1,002건)과 전기통신사업법(482건)을 압도했다.

저작권법(부정 44.24%)과 전기통신사업법(부정 44.80%)도 부정이 우세하기는 하지만 긍·부정의 격차는 완만한 편이다. 긍정 비율만 보면 저작권법이 24.99%로 가장 높고 전기통신사업법이 22.21%, 정보통신망법이 14.48%로 가장 낮다.

감성 언급이 정점에 이른 시기도 법마다 달랐다. 저작권법은 시행 직전인 5월 1주차의 642건이 최대였고, 8월 1주차에 122건으로 다시 올라 8월 1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재점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기통신사업법은 7월 1주차의 160건이 최대였으나 4월 말부터 6월까지 비교적 고르게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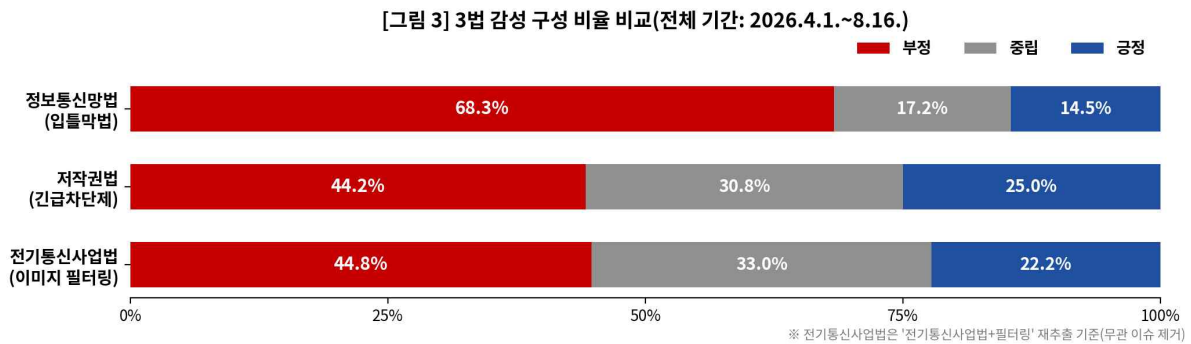
[그림 2] 온라인 규제 3법 주간 감성 언급량 추이(2026.4.1.~8.16.)



※ 감성 집계는 감성어 출현 문서 기준으로 [그림 1] 언급량과 집계 단위가 다름. 3개 패널의 y축 눈금은 서로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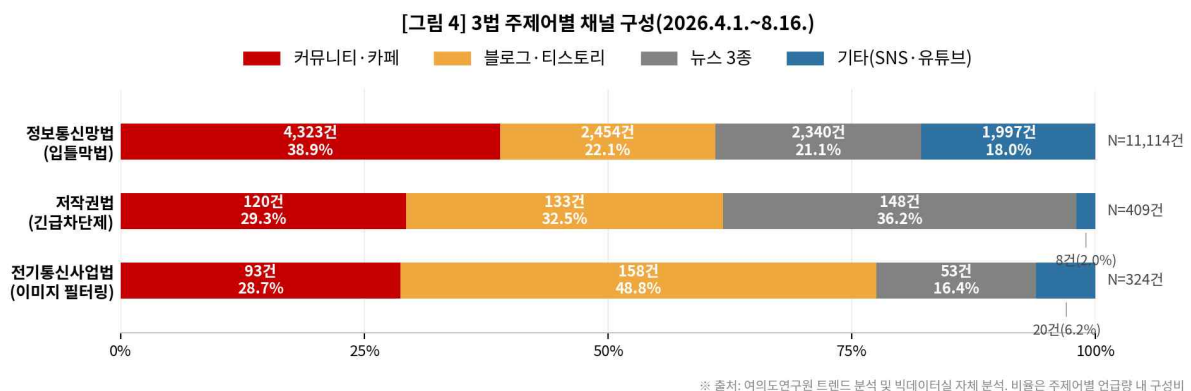
90) 빅데이터 해석상 유의사항

- 감성 분석 수치(38,081건 등)는 감성어 출현 문서 기준으로 언급량(11,114건)과 집계 단위가 달라 두 지표의 절대치를 직접 비교할 수 없음
- [그림 2]의 3개 패널은 규모 차이가 커 y축 눈금이 서로 다름: 패널 간 막대 높이의 직접 비교는 불가하며, 각 패널 내 시계열 변화와 구성비로 해석
- 전기통신사업법은 안면인증·개통 등 무관 이슈 제거를 위해 포함어 '필터링'으로 한정 추출: 관련 게시물 일부가 누락될 수 있어 절대 규모는 보수적(하한) 추정치
- 주제어 기반 집계 특성상 정보통신망법 급등에는 해당 법 요인이 지배적: 급등 규모를 3법 '중첩 효과'의 단독 증거로 보기보다 '시행 일정과 동조화된 반응'까지로 해석
- 저작권법·전기통신사업법의 절대 언급량(각 409건·324건)은 표본이 작아 주간 단위 증감을 해석에 주의 필요



□ 담론 지형의 특징: '검열' 프레임의 우세

이번 사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반대 담론의 주축이 통상적인 진영 구도와 다르게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망법 언급이 가장 많이 나온 채널은 커뮤니티·카페로 4,323건(38.9%)이었고, 이는 뉴스 3종의 2,340건(21.1%)을 웃돈다. 언론이 의제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이용자와 창작자, 중소 사업자가 담론을 견인한 것이다.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반발은 청원으로 확산되었다.⁹¹⁾ 루리웹과 디시인사이드 등 대형 커뮤니티에서 사업자 공지를 매개로 반발이 퍼졌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에는 'AI 인터넷 검열과 사이트 차단 반대' 취지의 청원이 다수 제기되었다.

담론을 주도한 것은 검열과 관련된 상징어들이었다.⁹²⁾⁹³⁾ 국민의힘은 '입틀막법'과 '신언패(愼言牌)'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커뮤니티에서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빗댄 통제 이미지가 회자되었다. 여권은 '가짜뉴스 피해 방지'와 '디지털 성범죄 차단' 프레임으로 대응했다.

91) 국회 국민동의청원 및 온라인 커뮤니티(루리웹·디시인사이드 등) 게시물 종합. "국민의 인터넷 자유를 무시하는 AI 인터넷 검열과 성인 사이트 차단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등 다수 청원 제기.

92) 쿠키뉴스, "국힘, '개정 정보통신망법' 전방위 제동...헌법소원·재개정 추진", 2026.7.7.

93) 앞의 각주 36의 자료 참조.

검열 프레임의 우세는 연관어 분석에서도 정량적으로 확인된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연관어 가운데 ‘사전검열’이 39건으로 전체 37위, 커뮤니티 채널에서는 15위에 올랐다. 정보통신망법의 연관어에서는 국민의힘·민주당·이재명 같은 정치 주체와 자유·표현의자유·헌법 같은 기본권 어휘, 배상·과징금 같은 제재 어휘가 동시에 상위에 나타났다.

[표 6] 3법 관련 온라인 담론의 주요 프레임·키워드(정성 분석)

담론 주체	주요 프레임	대표 키워드·상징어
국민의힘·보수 진영	표현의 자유 침해, 정권 비판 봉쇄, 위헌 입법	입틀막법, 신언패, 검은 마스크, 신(新)보도지침
커뮤니티·이용자	사전검열 일상화, 오검열, 서비스 위축, 역차별	AI 검열, 마이너리티 리포트, 오탐, 밈 차단
사업자·산업계	비용 전가, 규제 실효성 의문, 해외 사업자 형평	GPU 비용, 필터링 서버, 계도기간, 폐쇄 압력
여권·정부	가짜뉴스 피해 방지, 디지털 성범죄 차단, 창작자 보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투명성센터, 일베금지법 ⁹⁴⁾
해외·통상	디지털 무역장벽, 검열 권한, 기술 협력 위협	USTR 의견서, 150만 URL, 심각한 우려

※출처: 언론 보도·커뮤니티 게시물·정당 공식 발언 종합

[표 6-1] 3법 주제어별 상위 연관어(2026.4.1.~8.16.)

주제어	상위 연관어(전 채널, 출현 빈도)	특징
정보통신망법 (입틀막법)	국민(3,262) 정보통신망법(3,107) 자유(2,800) 국민의힘(2,438) 표현(2,253) 민주당(1,997) 표현의자유(1,942) 헌법(1,534) 배상(1,047) 과징금(935) 가짜뉴스(932)	정치 주체와 기본권·제재 어휘가 동시 상위 → 정치 쟁점화
저작권법 (긴급차단제)	사이트(198) 불법(137) 문화체육관광부(136) 저작권(122) 콘텐츠(116) 유통(109) 장관(103) 웹툰(61)	정책 실무 어휘 중심, 절대 규모 자체가 작음
전기통신사업법 (이미지 필터링)	필터링(167) 이미지(143) 정보(119) 조치(118) 이용자(109) 유통(103) 시행령(100) 규제(83) 사전검열(39)	이용자·규제 어휘 중심, '사전검열' 프레임 확인

※출처: 여의도연구원 트렌드 분석 및 빅데이터실 자체 분석(썬트렌드 활용)

94) 조선일보, “與, 일베 금지법 발의...”혐오 게시물 방치하면 폐쇄 명령까지”, 2026.6.5.

IV. 주요국의 온라인 규제와 사법적 통제

1. 미국: 사전제한 금지 법리의 확립

□ 사전제한(prior restraint)에 대한 위헌 추정

미국 법리의 출발점은 사전제한(prior restraint)에 대한 위헌 추정이다. 사전제한이란 표현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미리 막는 조치를 말하는데, 미 연방대법원은 *Near v. Minnesota*(1931) 판결을 통해 이러한 조치는 일단 위헌으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⁹⁵⁾ 표현한 뒤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표현 자체를 미리 봉쇄할 수는 없다는 원칙이 표현규제의 기본 문법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이 법리가 법률에 근거한 공식적 규제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Bantam Books v. Sullivan*(1963)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행정위원회가 법적 강제력 없이 유통업자를 압박해 서적 유통을 중단시킨 ‘비공식 검열’까지 위헌적 사전제한으로 판단했다.⁹⁶⁾ 이는 조사나 시정조치 같은 규제 압력을 매개로 플랫폼의 ‘자율’ 삭제를 유도하는 방식도 국가행위로 포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모호한 개념에 기초한 온라인 규제에 대한 판단도 있다. *Reno v. ACLU*(1997) 판결은 인터넷을 방송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는 매체로 규정하면서, ‘품위 없는 표현’ 같은 모호한 개념에 기댄 규제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했다.⁹⁷⁾ ‘허위조작정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처럼 모호한 정의에 기초한 규제에 대해 선례적 경고로 읽히는 대목이다.

2. 독일: NetzDG의 실험과 과잉차단 논란

□ 단시간 삭제 강제형 규제의 원형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NetzDG, 2017)은 짧은 시한 안에 삭제를 강제하는 규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⁹⁸⁾ 이용자 200만 명 이상의 SNS에 ‘명백히 위법한’ 콘텐츠를 24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5,00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였다.

95) *Near v. Minnesota*, 283 U.S. 697 (1931). 미 연방대법원은 표현에 대한 사전제한(prior restraint)에 위헌 추정의 원칙을 확립.

96) *Bantam Books, Inc. v. Sullivan*, 372 U.S. 58 (1963). 행정위원회가 법적 강제 없이 유통업자를 압박해 서적 유통을 중단시킨 ‘비공식 검열(informal censorship)’도 위헌적 사전제한에 해당한다고 판시.

97) *Reno v. ACLU*, 521 U.S. 844 (1997). 인터넷은 방송과 달리 최고 수준의 표현 보호를 받는 매체이며, ‘품위 없는(indecent)’ 표현 규제 조항은 모호성·광범성으로 위헌이라고 판시.

98)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NetzDG, 독일 네트워크집행법), 2017년 제정·시행, 2021년 개정, 2024년 대부분 폐지. 등록 이용자 200만 명 이상 SNS에 ‘명백히 위법한’ 콘텐츠의 24시간 내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최대 5,000만 유로의 과태료를 규정.

그러나 시행 직후부터 과잉차단(over-blocking) 문제가 불거졌다. 플랫폼이 과태료를 피하려고 적법한 콘텐츠까지 삭제한 것이다. 풍자 계정이 차단되는 등 상징적인 오검열 사례가 이어졌고, 결국 2021년 법 개정으로 이용자의 이익제기와 복원(put-back) 절차가 보장되었다.

전 UN 의사표현자유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는 두 가지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⁹⁹⁾ 하나는 NetzDG형 입법이 위법성 판단을 민간에 떠넘겨 과잉차단을 구조화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권위주의 국가들이 자국의 검열 입법을 정당화하는 모델로 이를 원용하는 ‘수출 효과’다.

NetzDG의 결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4년 독일 디지털서비스법(DDG) 시행으로 NetzDG는 대부분 폐지되었고, 관련 규율은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체계로 흡수되었다.

3. 프랑스: 아비아법 위헌 결정

□ 사법 판단 없는 삭제 강제는 위헌

프랑스는 더 이른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사례다. 아비아법(Loi Avia, 2020)은 혐오 콘텐츠를 24시간 안에, 테러·아동성착취물은 1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플랫폼에 강제했는데, 헌법위원회는 그 핵심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¹⁰⁰⁾

위헌 결정의 근거는 세 가지였다. 위법성 판단을 사법기관이 아니라 플랫폼에 맡겼다는 점, 극히 짧은 시한과 무거운 제재를 결합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 플랫폼이 적법한 표현까지 삭제할 유인을 갖게 되어 표현의 자유에 대해 ‘필요하지도, 걱정하지도, 비례하지도 않은’ 침해가 된다는 점이다.

이 결정은 한국 3법의 비교법적 선례다. 정보통신망법이 플랫폼에 자율 운영정책과 신고 처리 의무를 지우고 조사·시정조치로 뒷받침하는 구조, 그리고 이미지 사전 필터링 의무가 모두 같은 문제 지형 위에 있기 때문이다.

99) David Kaye, Speech Police: The Global Struggle to Govern the Internet, Columbia Global Reports, 2019. 전 UN 의사표현자유특별보고관인 저자는 NetzDG형 단시간 삭제 강제 입법이 과잉차단을 낳고 권위주의 국가의 모방 입법 명분이 되는 위험을 경고.

100) Conseil constitutionnel, Décision n° 2020-801 DC, 2020.6.18.(프랑스 아비아법 위헌 결정). 헌법위원회는 사법 판단 없이 플랫폼에 24시간(테러·아동성착취물은 1시간) 내 삭제를 강제하는 조항이 적법한 표현까지 삭제할 유인을 만들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필요하지도, 걱정하지도, 비례하지도 않은 침해라고 판시하고 핵심 조항을 위헌 결정.

4. EU: DSA의 절차 중심 규제 모델

□ '무엇을 지울지'가 아니라 '어떤 절차로 다룰지'

EU 디지털서비스법(DSA, 2022)이 택한 접근은 앞의 사례들과 다르다. 무엇을 지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절차로 다룰 것인가를 규율한다는 점에서다. DSA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포괄적·일반적인 사전 모니터링 의무의 부과는 명시적으로 금지한다(제8조).¹⁰¹⁾ 대신 신고·조치(notice and action) 절차, 삭제 사유의 고지, 이용자의 내부 이의제기를 규정하고, 투명성 보고와 초대형 플랫폼의 시스템 위험평가를 의무화한다.

요컨대 DSA는 위법성 판단 자체가 아니라 판단과 삭제, 구제에 이르는 절차를 규율하는 모델이다. 이는 단시간 삭제 강제형인 NetzDG와 아비아법이 실패한 경험을 반영한 규범적 수렴의 결과로 볼 수 있다.

5. 국제 인권규범: ICCPR 제19조와 3부 심사

□ 표현 제한의 국제 기준

국제 인권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자유권규약(ICCPR) 제19조 제3항과 UN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4호는 표현을 제한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요구한다.¹⁰²⁾¹⁰³⁾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것, 그리고 필요하고 비례적일 것이다. 아울러 특정 사이트나 시스템의 운영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규약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해석된다.

중개자 책임과 관련해서는 마닐라 원칙(2015)이 콘텐츠 제한 명령은 원칙적으로 사법기관이 내려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¹⁰⁴⁾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긴급차단·과징금 체계와는 정면으로 대비되는 지점이다. UN 의사표현자유특별보고관이 2021년 한국의 유사 입법에 대해 허위정보 정정의 명확화, 징벌적 배상의 비례성, 독립적 사법 심사를 권고한 것도 같은 3부 심사에 근거한 것이었다.¹⁰⁵⁾

101) 앞의 각주 88의 자료 참조.

10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 대한민국은 1990년 가입.

103)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34(CCPR/C/GC/34), 2011.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에 따른 표현 제한은 법률에 의한 규정(명확성), 정당한 목적, 필요성·비례성의 3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사이트·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반적 금지는 규약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해석.

104) Manila Principles on Intermediary Liability, 2015. 중개자에 대한 콘텐츠 제한 명령은 원칙적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기관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는 국제 시민사회 원칙.

105) UN OHCHR, Irene Kha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개서한(Communication AL KOR 5/2021), 2021.8.27.

6. 소결: 한국 3법 체계의 비교법적 위치

[표 7] 주요국 온라인 콘텐츠 규제 모델 비교

구분	규제 방식	판단 주체	사법 통제	경과·결과
미국	사후 책임 원칙, 사전제한 위헌 추정	법원 (사인 간 통지· 플랫폼 자율조치는 별론)	제한 조치에 사법 판단 선행 강함	Reno 등 규제 위헌
독일 (NetzDG)	24시간 삭제 강제 + 고액 과태료	플랫폼	사후적	과잉차단 논란 → 2024 DDG 시행으로 대부분 폐지
프랑스 (아비아법)	1~24시간 삭제 강제	플랫폼	사후적	2020 핵심 조항 위헌
EU (DSA)	절차 규제(신고·조치, 투명성, 위험평가), 포괄적·일반적 사전 감시의무 금지	플랫폼 (절차 통제 하)	절차적 보장	2024 전면 적용
한국 (3법)	사전 필터링 + 행정 즉시차단 + 유통 규제 (자율조치·과징금·배상)	행정기관·기술시스템 플랫폼 법원	제도별 상이 (과징금은 확정판결 선행)	2026 동시 발효, 헌법소원 진행

※출처: 각국 법령·판례 종합

□ 비교법적 결론

사법적 통제가 작동하는 민주국가들의 경험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한다. 프랑스에서는 단시간 삭제 강제형이 과잉차단 문제 때문에 위헌 결정을 받았고, 독일에서는 같은 논란 끝에 절차를 보강하는 쪽으로 후퇴했으며, EU는 처음부터 포괄적·일반적 사전 감시를 금지하는 절차 중심 모델을 채택했다.

그에 비해 한국의 3법 체계는 본 보고서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국가들 가운데 가장 강한 유형에 해당한다. 사전 필터링형과 행정 차단형, 유통 규제형이 한꺼번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별 요소마다 해외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거나 정책 실패가 확인된 설계를, 한국은 동시에 채택한 셈이다.

따라서 후속 대응의 방향은 규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된 ‘절차 중심 모델’로 재설계하는 데 있다.

V. 정책 대안

1.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집행 통제와 실증 추적

□ 논의의 축: ‘입법 결과 대기’에서 ‘집행 통제와 실증 추적’으로

법은 이미 시행 중이다. 2026년 1월 15일 함께 발의된 두 건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재개정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과 온라인 접속국가표시법(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079)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심사 단계에 계류되어 있다. 법률의 재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논의의 무게중심은 입법 결과를 기다리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이미 시행 중인 규제의 집행을 통제하고 그 결과를 실증으로 추적하는 쪽으로도 옮겨질 필요가 있다.

이는 재개정 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정 논의가 실증적 근거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선행 작업이다. 위헌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 오검열과 비용 부담의 실제 피해 자료, 통상 마찰의 경과가 확인되어야 제도 개선의 방향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

□ 헌법소원의 본안 판단을 위한 요건

7월 21일 각하 사유는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직접성·현재성 등 청구요건 미충족이었다. 따라서 다음 단계의 관건은 위헌 논거를 더 정교하게 다듬는 데 있지 않고, 구체적 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확보되는지에 있다. 삭제·접근차단 조치나 과징금 부과, 가중손해배상 청구를 실제로 받은 게재자·창작자·사업자의 사례가 나타나야 본안 심사의 문이 열린다.

이를 위해서는 처분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유형별로 정리하는 창구가 필요하다. 추적된 자료는 개별 구제의 출발점이 되는 동시에 청구인 적격과 침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입증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는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하고, 신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경로를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 하위규범(고시·가이드라인)에 대한 상시 점검

규제의 실제 강도를 정하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고시와 가이드라인이다. 법률 개정 없이도 다룰 수 있는 영역이고, 개선의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과징금 고시 [별표 1]의 ‘민주적 사회질서’·‘정책 왜곡’ 배점이 상위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이 1차적인 확인 수단이다. 법률이 명문으로 정한 풍자·패러디 면제를 축소 해석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방미통위에 공식 질의를 거쳐 해석 기준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하위규범 제정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은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점검할 수 있다. 나아가 고시와 가이드라인의 제·개정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위임입법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회복하는 과제다.

□ 개별 처분 단계의 구제 절차 정비

위헌 논쟁과 별개로, 개별 이용자와 사업자는 지금 당장 처분에 노출된다. 처분 단계의 구제는 그 자체로 권리 구제이면서 동시에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가 된다.

삭제·접근차단·과징금 처분에 대한 1차적 수단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다. 다만 소송 비용과 법률 전문성의 부담을 개인 창작자나 중소 커뮤니티 사업자가 감당하기는 어렵다. 공적 법률지원 체계를 통해 무료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하고, 처분 취소나 승소 사례를 오검열의 구체적 증거로 축적해 헌법소원과 제도 개선 논의에 순차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대안의 방향: ‘규제 여부’가 아니라 ‘규제 설계’

규제 자체에 대한 반대는 ‘가짜뉴스와 디지털 성범죄를 방치하자는 것이냐’는 반론에 취약하다.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려면 국제적으로 이미 검증된 절차 중심 모델을 대안으로 명확히 제시하는 편이 낫다.

기준선은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이다. 불법 콘텐츠 대응은 의무화되 포괄적·일반적 사전 감시는 금지하고, 신고·조치 절차와 삭제 사유 고지, 내부 이의제기, 투명성 보고로 규율하는 방식이다. 독일도 2024년 5월 디지털서비스법(DDG) 시행과 함께 NetzDG형 삭제 강제 모델을 걷어내고 연방망규제청을 디지털서비스조정관으로 지정해 절차 감독 체계로 전환했다.

절차 중심 모델이 곧 규제 공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위원회는 2025년 12월 5일 X에 투명성 의무 위반을 이유로 1억 2천만 유로를, 2026년 5월 28일 Temu에 위험평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유로를 부과했고, 2026년 7월 20일에는 알리익스프레스에 5억 5천만 유로를 부과해 제재 규모를 다시 경신했다.¹⁰⁶⁾ 사전 감시 의무 없이도 절차 의무의 집행만으로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재설계의 기본 원칙은 ‘허위정보 대응은 유지하되 위법성 판단은 법원이 맡고, 플랫폼은 절차 의무만 진다’로 단순화할 수 있다.

□ 시행 성과의 검증

시행 이후 실제 집행은 플랫폼의 자율 삭제·차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제 기관의 과징금 부과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도가 표방한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고 있는지, 그 대가로 적법한 표현이 얼마나 삭제되고 있는지를 나란히 검증해야 한다.

106) 한국경제, 「EU, X에 1.2억유로 과징금...디지털서비스법 도입후 첫 부과」, 2025.12.7.; 알파경제, 「EU, 테무에 약 3,500억원 과징금 부과...“불법 상품 판매는 DSA 위반”」, 2026.5.28.; 연합뉴스, 「EU, 불법 상품 판매 못 막은 알리익스프레스에 약 9300억 과징금」, 2026.7.21. X에 대한 제재는 계정 인증 표시·광고 투명성 등 DSA상 투명성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최초의 과징금 부과 사례이며, Temu에 대한 제재는 불법·위해 제품 유통 위험에 관한 위험평가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두 번째 사례다. 세 건 모두 콘텐츠의 위법성 판단이 아니라 절차·평가 의무 위반을 제재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신고·삭제·이의제기·복원 건수와 처리 기간, 처분 유형별 통계를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규제 실효성 지표(불법정보 유통 감소)와 부작용 지표(적법 표현 삭제·오탐)를 함께 산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계도기간 종료(2026.12.31.)와 본격 단속 개시(2027.1.1.)는 집중 점검의 분기점이 된다.

2. 이미지 필터링: 사전검열형에서 신고·대응형으로

□ 규제 방식의 전환: Notice & Takedown 원칙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일률적인 사전 필터링 의무를 신고·삭제 및 신속 대응 의무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용자나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때 신속히 조치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EU DSA 역시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은 의무화하면서도 포괄적·일반적 사전 감시는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 참고가 된다.

전환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과도기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형 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 보고를 의무화해 '시행령 우회 입법'을 통제하는 방안이다.

□ 오검열 구제와 비용 분담

오탐에 대한 구제 절차는 법으로 정해 두어야 한다. 이용자의 이의제기와 신속 복원 절차, 그리고 그 처리 시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필터링 성능 즉 오탐률과 미탐률의 검증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비용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 정부가 지정한 필터링 기술과 DB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거나, 공공 필터링 API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국내 이용자 규모를 기준으로 한 역외 적용 방안과 실효적인 집행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다.

3. 긴급차단제: 절차 통제의 법정화

□ '선차단'을 허용하되 '후심의'를 실질화

불법복제물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한다는 입법 목적 자체는 창작자 보호를 위해 타당하다. 문제는 행정 판단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고, 그 오류를 통제하는 절차적 안전 장치가 제도 신뢰의 관건이 된다.

우선 사후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사후심의를 처리해야 하는 시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시한이 지나면 차단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집행의 투명성도 필요하다. 차단 목록과 차단 사유, 이의제기 처리 결과를 분기별로 정기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오차단 피해에 대한 구제도 실효화해야 한다. 잘못 차단되어 피해를 입은 적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CDN 단에서의 차단으로 무관한 사이트까지 함께 막히는 부수적 차단(collateral blocking)이 발생했을 때에는 통지와 복구 의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4. 통상 리스크 관리와 상시 모니터링

□ 한미 디지털 통상 협의의 선제적 가동

USTR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 등재되고 그에 따른 후속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3법에 대한 통상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한미 디지털 통상 협의 채널에서 개선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방법이다. 나아가 온라인 규제 입법 전반에 대해 통상·국제규범 정합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 빅데이터 기반 시행 효과 상시 모니터링

제도 개선 논의를 뒷받침하려면 실증 자료가 필요하다. 3법 시행 전후의 온라인 언급량과 감성 추이, 오검열·과잉 삭제 사례, 커뮤니티 트래픽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분기별로 ‘온라인 표현환경 보고서’를 발간해 논의의 실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행히 기준선으로 삼을 자료는 이미 확보되어 있다. 본 보고서가 분석한 2026년 4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4.5개월치의 3법 언급량·감성·연관어 실측치를 최초 관측 기준선(baseline)으로 고정하고, 분기별로 다시 측정해 계도기간 종료(2026.12.31.)와 본격 단속 개시(2027.1.1.) 전후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법 전면 시행(8.11.) 직전에 언급량이 다시 오르는 현상이 확인된 만큼, 제도의 분기점마다 단기 집중 측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5. 입법 절차의 정상화: ‘시행령 우회’와 속의 절차의 회복

□ 규제 강도의 확대는 법률과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이번 사안에서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규제 강도의 확대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미지 필터링의 대상 확대는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이루어졌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 국회 심의를 우회한 것이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 원칙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규제 대상의 범위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과징금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에서 다시 방미통위 고시로 넘어갔고, 법률이 정한 면제 범위는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의 해석으로 좁혀졌다. 결국 누가 얼마의 제재를 받는지가 사실상 국회의 통제 밖에서 결정되는 구조다.

절차의 문제도 있다. 미디어 관련 입법이 반복적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처리되면서 충분한 심의 기회가 확보되지 못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입법에 대해서는 공청회와 영향평가 등 속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차원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 2026년 5~7월, '개별 규제의 합'을 넘어선 체계 전환 발생

세 법은 각각 정당한 정책 목표를 표방했다. 저작권법 긴급차단제는 5월 11일, 이미지 사전 필터링은 7월 1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7월 7일에 시행되었고, 저작권 보호와 디지털 성범죄 방지, 허위정보 대응이라는 목표는 그 자체로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들이 동시에 발효되면서 공통의 설계가 온라인 표현의 전 단계에 걸쳐 제도화되었다는 데 있다. 일부 단계에서 행정·기술·플랫폼의 조치가 사법적 최종판단에 선행하는 구조가, 업로드에서 유통, 사이트에 이르는 전 단계에 적용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시행 초기부터 이 규제 체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헌법소원이 접수되고 오검열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사업자의 비용 반발이 이어졌고, 여기에 미국 정부와 기업의 통상 문제 제기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현실화되었다.

□ 쟁점은 '규제 여부'가 아니라 '규제 설계'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불법촬영물과 불법복제물, 악의적 허위정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필요하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본 보고서의 취지가 아니다.

문제는 위법성을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판단하는지가 헌법 원칙 및 국제 규범과 충돌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헌법상의 검열금지·명확성·과잉금지 원칙과 부딪히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재설계의 축은 세 가지가 된다. 판단의 사법화, 절차의 투명화, 그리고 비용의 합리적 분담이다.

이 문제의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류 가능성이 있는 권력이 무엇이 진실인지 미리 판정해 표현을 봉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진리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교정해 가는 과정을 훼손한다는 밀(Mill)의 고전적 논거가 그것이다.¹⁰⁷⁾ 현재의 검열금지 법리와 각국의 위헌 결정은 이 통찰을 제도의 언어로 옮겨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대 담론의 주축이 특정 진영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이번 반발을 이끈 것은 일반 이용자와 창작자, 중소 사업자였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진영 대결이 아니라 디지털 기본권과 산업 생태계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위규범까지 확인한 결과 우려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제재 수준을 정하는 고시가 정보의 정치적 성격을 배점 요소로 채택하고 있고, 그 결과 규제의 설계 단계에서 이미 정치적 표현이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취급되고 있다. 제도 개선 논의는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¹⁰⁷⁾ Mill, John Stuart, *On Liberty*, London: John W. Parker and Son, West Strand, 1859. 오류 가능성이 있는 권력이 진위를 미리 판정해 표현을 봉쇄하는 것 자체가 진리 발견 과정을 훼손한다는 고전적 논거.

5대 핵심 제언

1.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한 논의의 축을 ‘입법 결과 대기’에서 ‘집행 통제와 실증 축적’으로 옮겨야 한다.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에 이르려면 실제 처분을 받은 청구인을 확보해 청구요건부터 갖추는 것이 우선이고, 과징금 고시 [별표 1]의 ‘민주적 사회 질서’·‘정책 왜곡’ 배점과 풍자·패러디 면제를 축소 해석한 가이드라인은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국회 보고 의무화를 통해 점검할 수 있다.
2. 개별 삭제·접근차단·과징금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를 실질화해야 한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 1차 수단이며, 창작자와 중소 사업자가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적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오검열의 증거로 축적해 헌법소원과 제도 개선 논의에 투입하는 것이다.
3. 대안은 ‘규제 반대’가 아니라 ‘설계 교체’로 제시해야 한다. EU DSA와 독일 DDG의 절차 중심 모델(사전 감시 금지, 신고·조치, 이의제기, 투명성 보고)을 기준으로 삼아 이미지 사전 필터링을 신고·삭제 체계로 전환하고, 그때까지는 계도기간 연장과 중소사업자 비용 지원, 오검열 이의·복원 절차의 법정화를 병행하는 방안이다.
4. 긴급차단제는 사후심의 시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시한이 지나면 차단이 자동 해제되도록 해야 한다. 차단 목록과 사유는 분기별로 공개하고, 오차단에 대한 국가 배상 절차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5. 규제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함께 검증하고 입법 절차를 정상화해야 한다. 신고·삭제·이의·복원 통계의 분기별 공개와 통상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규제 대상·제재 수준의 골격은 법률에 명시하며, 시행령·고시 제·개정 시 국회 상임위 보고를 의무화해 ‘시행령 우회 입법’을 통제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법령

-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2015.12.22. 삭제).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제2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제2026-22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2026.7.7. 제정·시행.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
- 「저작권법」 제124조, 제133조의2~제133조의4(2026.5.11. 및 2026.8.11. 시행).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26.7.7. 국무회의 통과) 제2조의2, 제35조의4~제35조의11 및 별표 1·별표 1의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4]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11 제2항 관련, 신설 2026.7.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 2026.1.6. 공포, 2026.7.7. 시행) 제2조, 제44조의7, 제44조의10, 제44조의11, 제44조의12, 제44조의14, 제44조의15, 제44조의24, 제6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European Union, Regulation (EU) 2022/2065 (Digital Services Act),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277, 2022.10.27.
-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NetzDG), 2017년 제정·시행, 2021년 개정, 2024년 대부분 폐지.
- Loi n° 2020-766 du 24 juin 2020 visant à lutter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

2. 판례·헌법재판소 결정

- 헌재 1996.10.4. 93헌가13·91헌바10(병합) 결정(영화법 제12조 등 위헌제청, 사전심의 위헌).
- 헌재 2002.6.27. 99헌마480 결정(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등 위헌확인, 불온통신 위헌).
- 헌재 2010.12.28. 2008헌바157·2009헌바88(병합) 결정(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허위통신죄 위헌).
- 헌재 2012.8.23. 2010헌마47·252(병합) 결정(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 헌재 2025.10.23. 2021헌마290등(2021헌마290, 2021헌마1521) 전원재판부 결정(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등 위헌확인).
- Bantam Books, Inc. v. Sullivan, 372 U.S. 58 (1963).
- Conseil constitutionnel, Décision n° 2020-801 DC du 18 juin 2020(아비아법 핵심 조항 위헌).
- Near v. Minnesota, 283 U.S. 697 (1931).
- Reno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521 U.S. 844 (1997).

3. 학술논문·단행본

- 박경신, 『표현·통신의 자유: 이론과 실제』, 논형, 2013.
- 황성기, 「불온통신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법률』 통권 제15호, 법무부, 2003.
- Balkin, Jack M., "Old-School/New-School Speech Regulation", 127 Harvard Law Review 2296 (2014).
- Balkin, Jack M., "Free Speech Is a Triangle", 118 Columbia Law Review 2011 (2018).

- Kaye, David, *Speech Police: The Global Struggle to Govern the Internet*, Columbia Global Reports, 2019.
- Kreimer, Seth F., "Censorship by Proxy: The First Amendment, Internet Intermediaries, and the Problem of the Weakest Link", 155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1 (2006).
- Meyerson, Michael I., "Authors, Editors, and Uncommon Carriers: Identifying the 'Speaker' Within the New Media", 71 *Notre Dame Law Review* 79 (1995).
- Mill, John Stuart, *On Liberty*, London: John W. Parker and Son, West Strand, 1859.
- Schauer, Frederick, "Fear, Risk and the First Amendment: Unraveling the 'Chilling Effect'", 58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685 (1978).

4. 정부·국제기구·연구기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관련 발표, 2026.5.11.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2026.7.8.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촬영물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 이미지 확대 시행 관련 발표, 2026.6.11.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20차 전체회의(2026.6.29.) 시행령 개정안 및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제정안 의결.
- Cloudflare,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출 디지털 무역장벽 관련 의견서, 2025.10.30.
- Keller, Daphne, "Empirical Evidence of Over-Removal by Internet Companies Under Intermediary Liability Laws: An Updated List", Stanford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CIS) 블로그, 2021.2., (최초 게시 2015.10.).
- Manila Principles on Intermediary Liability, 2015.
-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34 (CCPR/C/GC/34), 2011.
- UN OHCHR, Irene Khan(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Communication AL KOR 5/2021, 2021.8.27.

5. 언론 보도

- 경향신문, "뉴토끼'도 막힌다...문체부, 저작권침해 사이트 34곳 긴급차단", 2026.5.11.
- 경향신문, "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가결...'방송 3법' 중 EBS법만 남았다", 2025.8.21.
- 경향신문, "'악용 소지 논란' 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국힘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2025.12.24.
- 뉴스1, "자진폐쇄 비웃듯 '뉴토끼' 재등장...긴급차단 앞두고 두더지 게임", 2026.5.6.
- 뉴스스페이스, "[빅테크칼럼] 미국, 한국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강력 제동...'검열 우려'에 기술 협력 위협' 직격탄", 2026.1.2.
- 단비뉴스, 「n번방 방지법, 국내 사이트만 제재?」, 단비팩트체크, 2026.7.12.(수정 7.19.)
- 디지털타임스, "문체부, '뉴토끼' 차단명령... '저작권침해 사이트 34개 긴급차단'", 2026.5.11.
- 미디어오늘, "거짓으로 판명난 정보, 계속 유통해서 돈 벌면 과징금 최대 10억 원", 2026.6.30.
- 미디어스, "국힘, 망법 개정안 당론 발의 '온라인입틀막법 개정하라'", 2026.1.20.
- 알파경제, "EU, 테무에 약 3,500억원 과징금 부과... '불법 상품 판매는 DSA 위반'", 2026.5.28.
- 연합뉴스, "EU, 불법 상품 판매 못 막은 알리익스프레스에 약 9300억 과징금", 2026.7.21.
- 전자신문, "문체부, '뉴토끼' 등 34곳 차단... '불법사이트 수명 단축'", 2026.5.11.
- 전자신문, "방송3법 중 두번째 '방문진법' 국회 통과... 'EBS법'은 22일 처리 수순", 2025.8.21.
- 전자신문, "불법 사이트, 이제는 즉시 막는다... 긴급차단제 11일 시행", 2026.5.10.
- 조선일보, "與, 일베 금지법 발의... '혐오 게시물 방치하면 폐쇄 명령까지'", 2026.6.5.
- 조선일보, "[속보] '이진숙 자동면직' 방미통위 설치법 국회 통과... 여당 단독 처리", 2025.9.27.
- 중앙일보, "[단독] 미국무부, 韓정통망법 저격 '검열권 우려... 기술협력 위협'", 2025.12.31.
- 쿠키뉴스, "국힘, '개정 정보통신망법' 전방위 제동... '헌법소원·재개정 추진'", 2026.7.7.
- 한국경제, "EU, X에 1.2억유로 과징금... 디지털서비스법 도입후 첫 부과", 2025.12.7.

- 한국경제,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국회 통과…가짜뉴스 최대 5배 손해", 2025.12.24.
- SBS, "'개정 정통망법' 헌법소원 각하…'구체적 기본권 침해 없어'", 2026.7.22.
- SBS, "문체부 장관, 저작권 침해 '뉴토끼' 등 사이트 34곳 긴급 차단 명령", 2026.5.11.
- TorrentFreak, "Cloudflare Tells U.S. Govt That Foreign Site Blocking Efforts Are Digital Trade Barriers", 2025.11.6.

6. 법무법인·전문가 해설 및 온라인 자료

- 김선희·김정원·장봉진·박상현(법무법인 율촌),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규제", 법률신문 로켓센터, 2026.2.3.
- 법무법인 광장,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법률신문 로켓센터, 2026.3.9.
- 법무법인(유) 세종 ICT그룹,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뉴스레터, 2026.7.9.
-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저작권 침해 긴급차단제,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모든 것", 2026.5.28.
- 이수경·정호선·김상유·강석준·한재현·경기룡(법무법인 화우),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시행 및 가이드라인 발간", 법률신문 로켓센터, 2026.7.9.
- 얼리어답터뉴스, "2026년 5월 11일 시행 개정 저작권법, 불법복제물 긴급 차단·징벌적 손해배상으로 K-콘텐츠 보호 강화", 2026.5.17.
- 루리웹,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 확대 시행", 2026.4.30.
- 에팸코리아, "불법 촬영물에 대한 n번방 방지법 검열 적용 결과"(2023.4.11.)·"커뮤니티 공격에 대한 입장"(2026.5.28.)
- 지식발전소, "이미지 필터링 의무화 7월 1일 뜻과 적용 대상" 및 "인터넷 이미지 AI 검열 7월 시행 뜻과 적용 대상, 오탐지 사례·대응 방법 정리", 2026.7.
- 국회 국민동의청원 및 온라인 커뮤니티(루리웹·디시인사이드 등) 관련 게시물, 2026.